

석사학위논문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권 미 선

2008년 2월

#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지도교수 권인혁

권미선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권미선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년 2월

Jeju Chulga Haenyeo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the Dispute of the Fishery Practices

Kwon Mi-Seon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IN-HYU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8.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Jeju Chulga Haenyeo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the Dispute of the Fishery Practices

‘Haenyeo(Women divers)’ existing only in Korea and Japan, have the uniqueness as diving business resulting in attracting the attention from the whole world. Diving into the sea out of Jeju or ‘Chulga(leaving home) Muljil (diving)’ is leaving Jejudo island in order to make much larger money to other areas.

Jeju Haenyeo advanced into each local coastal province as well as various areas in foreign countries and had robust activities fro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late of 1970s after the liberation. It shows that women divers have had the significant financial values after leaving their hometown and working in the coastal sea areas to make a profit.

To summarize this study, it focused firstly on the origins of women divers and the background of their advancements. ‘Chulga’ is leaving home in order to earn money to other areas. The origins of Jeju women divers started from the time when for the first time they went to Mokdo Island near Busan in the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reason of leaving home is because their labor power has gained the recognition as the financial ability due to increased prices of seafood gathered by Haenyeo. And also the change of their diving device including distributing diving binoculars happened resulting in enhancing the productivity more than ever. The Japanese diving businesses with advanced skills exploited competitive seafood such as abalones and sea cucumbers recklessly. Their indiscriminate fishing drained the coastal fishing ground of its resources and

caused the decrease of products, which forced Jeju Haenyeo to go to other coastal areas to make money, only to advance into the peninsula's each surrounding sea areas as well as even in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Japan, China, and Russia.

Next,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s by the certain period such a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after the liberation. Usually for two to eight months as one fishing season, ten to fifteen Haenyeo went to other areas following their leader, stayed together, and sent their earned money to their homes in Jeju.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y served as financial supporters for Jeju economy advancing into the surrounding ar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Japanese archipelagos. However, they had suffered from a lot of troubles caused by the exploitations from Japanese brokers and their leader. As a matter of worse, the association of Haenyeo fishery became a company dominated one, only to deepen their troubles. After the liberation, as previously done practices, even though they tri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oor domestic finances making inroads into each coastal area near the East Sea, the West Sea, and the south coastal line, they faced discords with local fishing businesses such as the dispute of fishing practices. In addition, other examples of exploitation continued to happen: increase of fishing fee by local fishing association, illegal pricing of fishing ground, incompetent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nd ill-treatment by evil-natured creditors.

In the next chapter, the author focused on the changes of Haenyeo caused by the dispute of fishing practices. In modern times, Jeju Haenyeo have collected seashells in unexplored fishing ground. In the late of 19<sup>th</sup> century, Jeju Haenyeo under the Japanese trade businesses who dominated the fisher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ecame encountered great and small struggles with local fishers. After that, fishing dispute with local

residents in the South Gyeongsang Province occurred in 1920s became the beginning point for them to be qualified for fishing in that area with a certain fishing fee. Because of that, the number of Haenyeo in 1930s rapidly increased and they extended their domains to each coastal lin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around the North East South Asia near Japan, China, and Russia. This shows that they served as significant supporters for Jeju economy with more than doubled fishing amount compared to one in diving around Jeju Island. After the liberation, the fishing dispute in the North Gyeongsang district was serious and in 1956, the legal number to fish was confirmed as 1,070 divers under the ruling by the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illegal Haenyeo beyond the rule increased and they concentrated on that area. It was when illegal distance diving struggled fierce exploitations, though, much better income caused the increasing number of divers. In the late of 1960s, after the failure of fishing practices lawsuit, the local sites which admitted the fishing habits became under the restrictions, resulting in reducing the advances into the North Gyeongsang but producing the advances into other districts such as the South Jeolla and the South Gyeongsang Provinces. However, with the increasing illicit divers, the Jeju authorities' plan gained no fruit, only to confirm th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statistics between the Jeju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fisheries cooperative union.

Finally, this paper is to disclose the exploitation and the troubles suffered by Haenyeo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to analyze the developments of Haenyeo in light to the dispute of fishery practices. The consideration of Haenyeo in distance areas serves as the part of the history of Jeju Haenyeo. It can raise the awareness of them even in small remains as a valuable symbol for Jeju residents.

# 목 차

## Abstract

I. 머리말 .....	1
II. 출가해녀의 기원과 진출배경 .....	7
1. 출가해녀의 기원 .....	7
2. 출가해녀의 진출배경 .....	9
III.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 .....	17
1. 일제강점기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 .....	17
2. 해방이후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 .....	24
IV.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의 실상 .....	34
1. 일제강점기 입어 분쟁 후 변화 .....	34
2.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의 입어관행 분쟁 후 변화 .....	43
3. 1960년대 후반 입어관행 분쟁 패소판결 후 변화 .....	49
V. 맺음말 .....	56
<부록>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 연표 .....	59
참고문헌 .....	61

## <그림·표> 목차

<그림 1> 1931년 나잠어업자 국내·국외 분포 .....	39
<그림 2> 1932년 제주도 출가해녀 국내·국외 분포 .....	40
<표 1> 1930년대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	42
<표 2> 1960년대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	47
<표 3> 1970년대 제주도 조사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	53
<표 4> 1970년대 수협중앙회 조사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	53





## I. 머리말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해녀(海女)’는 나잠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출가(出稼)’는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돈벌이하러 가는 것으로, ‘출가해녀(出稼海女)’는 해녀들이 제주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벌러 가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근대기<sup>1)</sup>인 1890년대 말부터 한반도 각 지역 및 외국의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 1970년대 말 까지 활발히 활동하여 그들의 능력을 세상에 내보였다. 곧,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여 작업한 결과 이들의 능력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이 출가물질<sup>2)</sup>을 하게 된 원인은 근대기 일본 어업인들의 진출과 남획으로 말미암아 생산물이 감소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일상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나가 자유롭게 생활하며 돈을 벌어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해방이후에는 17세 이상의 해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나갔다가와야 할 인식이 들만큼 출가물질 작업이 극성스러웠다. 그러나 제주도를 떠난 해녀들은 출가지역에서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한 채 영세한 생활을 하며 생업을 영위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근현대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이 겪었던 착취와 수탈의 실태를 밝히고,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의 실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가해녀에 대한 고찰은 제주해녀들의 생활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의 해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인식을 깨우치는 것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녀(海女)’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녀(海女)’는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

1)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근대기를 1890년대 후반부터 일제강점기 까지 보았고, 해방이후부터 한반도 각 연안으로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했던 1970년대 후반 까지를 현대로 보았다.

2) ‘물질’은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물질하러 간다’, ‘물질작업’으로 해녀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다.

역, 천초 등의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이는 ‘잠녀’·‘잠녀(潛女)’·‘잠수’·‘잠수(潛嫂)’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며, 제주도내 각 지역에서도 각각 다르게 불린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 ‘잠녀(潛女)’는 1629년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후기 여러 문헌<sup>3)</sup>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해녀(海女)’라는 용어는 1791년 위백규(魏伯珪)의 『존재전서(存齋全書)』중 금당도선유기(金塘島船遊記)조<sup>4)</sup>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결성되면서 공식적으로 쓰이게 되어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문헌에는 거의 ‘해녀(海女)’가 사용되었다. ‘잠수(潛嫂)’는 행정적인 용어로 1967년부터 사용되었고, 1984년 개정된 수산업법에 ‘잠수(潛嫂)’로 명시되었다.

‘해녀(海女)’는 일제강점기 일본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해녀를 업신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만, ‘바다에서 일하는 여자’의 뜻이 강하다. 그러나 ‘잠녀(潛女)’ 역시 ‘잡녀(雜女)’와, ‘잠수(潛嫂)’는 ‘잠수(潛水)’와 혼동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해녀들을 만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지를 물어보면 ‘해녀(海女)’라고 하기도 하고, ‘잠수(潛嫂)’라고도 하며,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없다고 한다. 주로 잠수·잠수(潛嫂)는 해녀들의 집단 내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해녀(海女)’는 일반인들에게 통용되어 널리 알려진 용어로 학문적인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5)</sup> ‘해녀(海女)’는 점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보편화 되는 추세로, 본고에서는 일반에게 널리 통용된 ‘해녀(海女)’

3) ‘잠녀(潛女)’가 기록된 여러 문헌자료 중 다음의 3가지 문헌을 소개하겠다.

① 이건,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198쪽.

해산물에는 단지 생복, 오징어, 미역, 옥돔 등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하게 여기는 것은 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라 한다. 「海産只有 生鰓 烏賊魚 粉藿 玉頭魚等數種 又有名不知數種魚外 更無他魚. 其中 所賤者藿也 採藿之女 謂之潛女」.

② 이익태 저·김익수 역, 『知瀛錄』(제주문화원, 1997), 85~86쪽, 122~123쪽.

진상하는 추인복을 전복 잡는 잠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왔는데, 늙고 병들어 거의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進上搥引鰓專責於採鰓潛女九十名 而老病居多不能支堪」.

③ 신광수 저·신석초 역, 『石北詩集』(대양서적, 1975), 192~193쪽.

탐라 여자들은 잠수질을 잘하느니라. 열 살 때 벌써 앞 냇가에서 배운다 한다. 이곳 풍속에 신부감으로는 잠녀가 제일이다.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4) 순풍이 불자 배를 띄워 평이도에 이르렀다. 온 포구에서 해녀들이 전복 따는 것을 구경했다. 이들은 벌거 벗은 몸을 막 하나에 의지하고 깊은 물속에서 자맥질했다. 「順風流到平伊島統浦觀海女採鰓其裸身佩瓢到入深淵」. 위백규, 『存齋全書』(경인문화사, 1974), 516쪽.

5)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8쪽.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문헌 및 신문기사의 인용문에는 시대상을 고려하여 기록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현재까지 ‘해녀(海女)’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출가해녀에 대한 연구 역시 1900년대부터 제주도를 연구하던 일본학자들에 의해 선행되었다.

먼저 1910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한국수산지』 제3집 제주도편<sup>6)</sup>에는 제주도 주변의 수산물 생산 및 가공현황 뿐만 아니라 잠수업(潛水業)과 잠수기업(潛水器業)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 『제주도세요람』의 「도민의 출가」<sup>7)</sup>에서는 당시 해녀의 출가지역과 해녀 수 등 출가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1933년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는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sup>8)</sup>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취락, 물산, 해녀, 농민의 일본출가 등 1930년대 제주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해놓았다. 이 중 「제주도 해녀」는 일제강점기 출가해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적 조사를 위해 제주도로 건너온 이즈미세이치(泉 靖一)는 『제주도』<sup>9)</sup>에서 「어로와 가족」의 연구를 통해 나잠기술, 나잠노동의 형태에 주목하였고, 다구치테이키(田口禎熹)는 1933년에 「제주도의 해녀」라는 글을 『조선 : 218호』<sup>10)</sup>에 게재하였다.

이 시기 일본학자들의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 일환으로 제주도의 인구, 부락형성, 지리,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출가해녀들의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0년대의 金榮·梁澄子の 『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sup>11)</sup>는 제주도의 해녀가 일본으로 출가해서 정착생활을 하는 과정을 현지조사를 통해 상세히 보여

6) 조선총독부 농상공부편찬, 『韓國水産誌』 제3집 濟州島, 1910.

7) 제주도청 편·홍성목 역, 「濟州島勢要覽」 『濟州島の經濟』(제주시 우당도서관, 1999).

8)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地理學的 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9) 이즈미세이치(泉 靖一)저·홍성목 역, 『濟州島』(제주시 우당도서관, 1999).

10) 다구치테이키(田口禎熹)저·홍성목 역, 「濟州島の 海女」 『濟州島の 옛 記錄』(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11) 김영·양정자 저 / 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도서출판 각, 2004).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녀에 대해 민속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가해녀에 대한 연구는 강대원이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1970년에 출간된 『해녀연구』<sup>12)</sup>, 1973년의 『개정판 해녀연구』<sup>13)</sup>, 2001년의 『제주잠수권익투쟁사』<sup>14)</sup>에 는 출가해녀에 대한 연구가 총망라되었다. ‘잠수의 발상’에서는 작업도구, 해녀기술 등 해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이후까지 출가해녀들의 생존권투쟁, 항일운동, 입어관행권 재정에 대한 분쟁과 공동어업권을 위한 사회학적 고찰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제주도가 발간한 1996년 『제주의 해녀』<sup>15)</sup>와 김영돈의 2002년 『한국의 해녀』<sup>16)</sup>에는 해녀의 어로기술과 입어관행, 신앙, 노동요 등의 해녀민속을 사례조사를 통해 민속학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중 ‘바깥물질’은 제주도의 해녀들이 출가하여 나잡업을 한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06년 출판된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sup>17)</sup>는 제주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를 문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재해석 하고, 제주해녀학 정립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중 박찬식의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sup>18)</sup>은 역사 문헌자료를 통한 해녀의 역사기록을 총정리 했고, 좌혜경은 「제주 출가해녀의 현지적응」<sup>19)</sup>에서 제주해녀가 출가물질을 나가 정착한 사례, 일본에 정착한 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 외에 진관훈은 『근대제주의 경제변동』<sup>20)</sup>이란 책을 통해 경제학 측면에서 「해녀경제」를 다루었고, 유철인은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sup>21)</sup>의 글을 통해 해녀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였다.

12) 강대원, 『海女研究』(한진문화사, 1970).

13) 강대원, 『改訂版 海女研究』(한진문화사, 1973).

14)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15)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1996.

16) 김영돈, 『한국의 해녀』(민속원, 2002).

17)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8)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9) 좌혜경, 「제주 출가해녀의 현지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20)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도서출판 각, 2006).

21) 유철인,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 『개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본고에서는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실태와 입어관행 분쟁을 문헌상의 해녀 자료와 근현대 일본학자들의 기록, 신문기사, 해녀에 관련된 문서 등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먼저 출가해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 ‘잠녀(潛女)’와 ‘해녀(海女)’에 대해 기록된 사료를 검토하였다. 문헌자료의 ‘잠녀(潛女)’ 기록은 이건의 『제주풍토기』(1629년), 이익태의 『지영록』(1694년), 신광수의 『석북집』(18세기 중엽) 등의 사료를 파악하였고, ‘해녀(海女)’에 대한 기록은 위백규의 『존재전서』(1791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근대기 제주도의 시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검토하였고, 『한국수산지』(1910년), 『제주도세요람』(1930년대 후반),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의 「제주도 해녀」(1933년) 등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출가해녀의 진출배경과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외 근현대 출가해녀 관련 자료로 경상남도의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1920~1935년)와 해녀어업조합에 관련 자료(1920~30년대), 제주도 당국의 출가해녀 보호대책에 따른 문서(1960~80년대)들은 출가해녀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1920~30년대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신문기사와 1950년대 이후 제주신보(1960년대 제주신문으로 변경)·제민일보의 ‘해녀(海女)’ 기사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해방이후 출가해녀 상황에서는 1950~1970년대 출가물질을 나가 현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 제주도 해녀들의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과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출가해녀에 대한 시대적 변천과정을 문헌자료와 신문기사 등의 역사적 기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시대상을 통해 사실을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출가해녀의 의미와 기원을 파악하고 근대기 혼란스러운 시대상 속에서 제주도 출가해녀의 진출배경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출가해녀의 진출상황을 살펴보고, 현지로 나간 출가해녀들이 작업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조건하에 착취와 수탈의 실태를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로 나누어 파악한다.

IV장에서는 출가해녀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 입어관행 분쟁에

중점을 두고, 시기를 나누어 파악한다. 그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입어 분쟁 후 1930년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의 입어관행 분쟁 후 1950~60년대 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960년대 후반 입어관행 패소 판결 후 1970년대 변화양상을 고찰한다.

이어 V장에서는 근현대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물질을 되짚어 보며,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다.



## II. 출가해녀의 기원과 진출배경

오늘날 해녀(海女)들에 의한 나잠업(裸潛業)은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와 일본의 각 연안에서 어업의 한 형태로서 행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해녀(海女)의 기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본기(高句麗本紀)」에는 ‘가즉섭라소산(珂則涉羅所産)’의 기록이 있어 ‘가(珂)’는 섭라(제주)의 진주 혹은 패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2)</sup> 이로 미루어 볼 때 해녀의 나잠업(裸潛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19세기 말부터 타 지역으로 진출하여 일을 했다. 그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가까이의 다도해의 여러 섬을 비롯하여 동해·서해안 등 한반도의 바다를 재패하고, 나아가서는 일본 대마도, 중국의 대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가(出稼) 하여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해녀들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은 한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가난한 섬에서 산업의 근간을 세우는 귀중한 수입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장에서는 출가해녀의 의미와 출가(出稼)의 기원을 파악하고, 혼란스러운 제주도의 시대상속에서 해녀들이 타 지역으로 진출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출가해녀의 기원

22)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본기(高句麗本紀)」(문자명왕 13년)에는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가옥은 섭라의 소산인데 「但黃金出自扶 珂則涉羅所産」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섭라(涉羅)’는 ‘탐라(耽羅)’, ‘탐모라(耽牟羅)’, ‘도라(都羅)’ 등과 같이 제주도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고대 제주도의 명칭이 정확히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백제나 중국에서 적당히 표기해 놓은 것 같다. 진영일,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 연구, 『인문학연구』 제6집(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162쪽.

탐라국은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까지 특산물인 ‘가(珂)’를 갖고 가서 교역하고 있었다. 그것은 중국인에게 부여에서 산출하는 황금과 함께 중요시 되는 것으로, 탐라에서 산출되는 ‘가(珂)’는 소라 종류로서 말재갈 장식을 의미한다.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제3집(제주도사연구회, 1994), 25~29쪽.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토질이 척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해안지역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전복, 미역 등의 바다의 자원을 채취하였고, 중산간 사람들은 말 등의 가축을 방목하여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며 가내수공업품을 가지고 쌀, 배, 소금 등과 물물교환을 하기도 했다.

해녀에 의한 나잠업은 옛날부터 해안가의 암초에 붙어 서식하는 해조류와 패류 자원이 풍부했던 제주도의 부녀자들에게 독특한 어법으로 전승되어 왔다. 제주도의 부녀자들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며,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노동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바다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한 집안의 경제력이 부녀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대개 7~8세의 어린나이에 얇은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것을 익혀 물질하러 가는 어머니와 할머니, 동네 해녀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물질하는 것을 배운다. 이들이 15~16세가 되면 마을의 상군해녀들과 함께 물질을 나가면서 해녀를 직업으로 삼고 생활한다. 이들은 해녀공동체인 각 마을 어촌계의 ‘해녀회’에 가입하여 불턱에서의 상군, 중군, 하군의 위계질서를 지켜가면서 그에 따른 의무와 도리를 배우고 익혀나가는 동안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어엿한 해녀로 성장하는 것이다.

먼저 ‘출가(出稼)’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출가(出稼)’는 고향을 떠난 다른 지역으로 돈벌이하러 가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집을 떠나서 날씨가 따뜻한 4월부터 8월까지 제주해녀가 육지로 물질을 떠나는 것’<sup>23)</sup>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출가’는 근대기에 와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를 대체할 전통적인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주도라는 섬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출가물질’, ‘바깥물질’, ‘베갯물질’<sup>24)</sup>, ‘원정물질’, ‘육지물질’, ‘물질 나간다’ 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작 해녀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물질하는 것을 단순히 ‘육지물질 허래간’<sup>25)</sup>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은 ‘해녀(海女)’, ‘잠녀(潛女)’, ‘잠수(潛嫂)’의 용어 사용만큼이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해녀들이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 돈벌이하러 나간다는 의미의 ‘출가해녀(出稼海女)’라는

23)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쪽.

24) ‘베갯물질’은 바깥물질을 뜻하고, 물질 나가는 곳이 한반도인 경우엔 ‘육지물질’이라는 말을 쓴다. 제주인들은 바다 건너 한반도를 흔히 육지라고 한다.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1996, 218쪽.

25) 한립화, 『해양문명사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92~93쪽.



용어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출가해녀의 기원을 살펴보면, 문헌상으로는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出稼)’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학자들의 기록으로는 『제주향토기』<sup>26)</sup>에 ‘1887년 경남 부산부의 목도(牧島)로 간 것이 시초’라는 기록이 보이며, 1915년 당시 제주군 서기였던 에구치(江口保者)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게 최초’<sup>27)</sup>라고 하였다. 마쓰다이치지(槲田一二)<sup>28)</sup>와 1920~1935년 경상남도의 『제주도 해녀입어문제경과』에는 ‘1895년 부산부 목도(지금의 영도)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9)</sup> 결국 제주도의 해녀들은 1890년대 경남 부산의 목도(牧島)에 첫 출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출가년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2. 출가해녀의 진출배경

근대기 제주도 해녀들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기술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출가했던 이유는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했던 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제주도의 시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주도에 있어서 근대기는 그동안 억눌렸던 부조리와 억압에 저항하여 나가는 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개화사상이 태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는 오랫동안 억압당했던 농민들의 울분이 분출하기 시작하여 농민 전쟁이 활발히 일어났고, 천주교의 탄압으로 외국 함선이 등장하고 통상 압력이 가해져 여러 외국과의 개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낯선 문화를 받아들여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할 수 없었던 조선은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빚어내었고, 제주도

26) 1958년 양홍식·오태홍의 『제주향토기』 프린트 본에 기록되어 있다.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27쪽.

27) 박찬식, 앞의 논문, 2006, 127쪽.

28) 마쓰다이치지(槲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0쪽.

29)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3쪽.

에도 영향이 미쳐 여러 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sup>30)</sup>

1890년대 말엽 제주도에 대한 일본의 어업침탈은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이었다. 개항이후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적, 경제적 침탈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 선진 어업기술을 갖춘 일본어민들은 제주 연해에 진출하여 제주도민의 어장을 남획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00년대 초 일본자본주의가 근대공업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일본과 가까운 제주도에 대량으로 이끌어 내자 제주도민들은 일본에 저임금 노동자로 진출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한 조세의 수탈,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박탈 등으로 제주도내 무산자 층이 증가하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도민들은 섬 바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노동시장에 유입된 대부분이 젊은 남성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제주도의 여성노동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sup>31)</sup> 이 시기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 오사카의 공장을 찾아 제주바다를 건넜고, 해녀들도 무리를 지어 한반도의 각 연안과 일본 지역으로 출가노동에 나섰다.

이러한 시대상을 바탕으로 근대기 제주해녀들이 출가물질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개항이후 일본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해녀들의 노동력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을 들 수 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상품가치가 높아져 소득이 증대하였고, 1900년경부터는 일본인 무역상의 등장으로 그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장성이 극히 높아져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up>32)</sup>

근대기 토지가 척박한 제주도에서는 농업생산력은 별로 높지 않았고, 해녀노동 이외의 어업이나 목축업도 현금수입원으로 효과는 적었다. 이후 제주도와 오사카 간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일본으로의 출가 노동자가 증가하기 전까지 해녀노동은 제주도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현금수입원으로 보여진다.<sup>33)</sup>

30) 당시 제주도에 발생한 민란으로는 1862년(철종 13) 임술농민봉기(壬戌農民蜂起), 1890년(고종 27) 경인민란(庚寅民亂), 1896년(건양 1) 병신민란(丙申民亂), 1898년(광무 2) 무술민란(戊戌民亂), 1901년(광무 5) 신축천주교란(辛丑天主教亂)이 있다. 홍순만, 「제6장 조선시대 말기, 『濟州道誌』 제2권(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529~531쪽.

31) 「제주도세요람」에 의하면 1938년경에는 당시 전체 제주도 인구가 약 20만 명 이었는데 이중 1/4에 해당하는 5만의 인구가 일본으로 도향하였다고 한다. 즉 가구당 1명 이상이 일본의 노동시장에 유입된 셈이다.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4쪽.

32) 천초 등의 해조류의 이용도가 높아져 부산일대를 기점으로 한 해조상이 점차 늘어났다.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도서출판 각, 2006), 257쪽.

33) 후지나가 다케시(藤永 壯)저·홍성목 역, 「1932年 濟州島 海女の 鬪爭」 『濟州島の 옛 記録』(제주시 우당도서관)

1910년 조선총독부 실시한 어장조사 보고서 『한국수산지』에는 해녀노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고, 해녀노동의 결과가 경제적 수입으로 자리매김 해왔던 것을 보여준다.<sup>34)</sup> 이는 해녀들의 노동력이 상품경제체제 속으로 돌입하여 수입이 증가하자 해녀어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대기 해녀작업에 있어 쌍안잠수경(雙眼潛水鏡)의 보급이라는 작업도구의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눈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깊은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쌍안잠수경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중작업의 시야가 2~3m에서 20m까지 넓어지고 눈의 피로도 감소하게 되었다.<sup>35)</sup> 결국 해녀도구의 발전으로 인한 작업 기술의 진보와 어획량의 증가, 해산물의 판로가 확대되어 해녀노동으로 얻어지는 현금수입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해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일본인 잠수기업자의 진출로 제주도내 바다어장이 황폐화되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해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출가노동을 나서게 되었다.

1883년 6월 22일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은 일본인이 조선 연해에서 조업하고, 조선인이 일본 대마도까지 조업할 수 있다는 약정으로 한반도 연안에 있어서 일본인의 어업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sup>36)</sup> 그러나 당시 조선어민은 영세한 어업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일본의 연안까지 출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표면상으로는 조약의 평등을 가장한 일본의

관, 2001), 89쪽.

34) 잠수업은 전복, 해삼, 천초, 미역, 감태(摺布)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자의 직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본도 수산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그 소장(消長)은 곧 도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수확은 전복, 해삼은 하루에 적게는 1~2개, 많을 때는 10개를 넘는 일은 드물다. 천초는 하루에 적게는 5~6관, 많게는 10~12관에 이르고 미역은 하루에 3~4과(把) 정도, 1과(把)는 20주(株)이다.

조선총독부 농상공부편찬, 『韓國水産誌』 제3집 濟州島, 1910. 34쪽.

35) 다카노후니오(高野史男)저·정광중 역, 「쇠퇴하는 해녀어업에 대하여」, 『濟州島史研究』 제11집(제주도사연구회, 2002), 50쪽.

36) 『고종실록』 권20, 고종 20년 6월 22일조,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4도(道)의 연해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치쿠젠(筑前), 이시미(石見) 나가도(長門)(조선해에 면한 곳), 이즈모(出雲), 쓰시마(對馬島)의 연해에 오가면서 고기 잡는 것을 허가한다. 『准日本國漁船, 於朝鮮國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濱, 朝鮮國漁船, 於日本國肥前筑前石見長門(對朝鮮海面處)出雲對馬海濱, 往來捕漁』.

한반도 통어에 대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sup>37)</sup> 그 이전부터 조선 연안 내에 밀어(密漁)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제주도 주변에는 잠수기업자가 일찍부터 출어해오고 있었음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sup>38)</sup>

일본인 잠수기업자가 채취한 것은 전복과 해삼이었다. 잠수기어업은 지금의 우주복과 비슷한 잠수복을 착용하여 바다 밑에서 걸어 다니면서 패류 등을 채취하는 형태로, 잠수복 안으로 호스를 연결하여 배 위에서 펌프로 공기를 들여보내 깊은 바다 속에서도 장시간의 잠수가 가능하다. 1회 잠수시간을 비교해보면 해녀들은 1~2분 정도에 비해 잠수기업자들은 1시간 이상이다. 태풍이외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었다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다소 악천후 날씨에도 조업이 가능했다.

이러한 일본인 잠수기업자의 진출로 제주도 수산자원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갈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수산지』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전복은 연안 없는 곳이 없어 거의 무진장(無盡藏)이라고 일컬어져 왔으나 일찍이 日本 잠수기업자들이 도래(渡來)하여 남획한 결과 지금은 크게 감소했다. 예부터 토착(土着)의 잠수부(潛水婦=海女)들이 이것을 캐어왔지만 현재는 하루 종일 조업해서 겨우 1~2개를 잡는데 불과하다. 잠수기업자는 다소 깊은 곳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획이 있다고는 하나 이전 옛날과 같이 거리(巨利)를 얻을 수 없다. 특히 본도산(本島産)은 형상이 큰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소형이 되고 말았다.<sup>39)</sup>

제주도 연안에 내어한 일본인 잠수기업자들은 대부분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잠수기업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어로방법은 능수능란한 것이므로 제주도 해녀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들은 대개 잠수기선을 몰고 들어와 제주바다의 밑바닥까지 훑어서 전복과 해삼 등을 모조리 잡아갔다. 이는 제주도 어민들에게는 생업에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손실을 끼쳤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일본어민의 제주도 연해 내어(來漁) 반대투쟁을 벌여 일본인의 출어를 금지하는 훈달(訓澆)<sup>40)</sup>이 내

37)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67~68쪽.

38) 1879년경부터 침투하기 시작한 잠수기어업은 가파도, 비양도를 근거지로 조업하였다. 강만생,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 제3집(제주도연구회, 1986), 105쪽.

39) 조선총독부 농상공부편찬, 『韓國水産誌』 제3집 濟州島, 1910, 34쪽.

40) 제주도는 도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 특히 채복(採鮑)·채곽(採藷)은 모두 부녀자, 곧 잠수들의 전업이 되어 있는데 만일 외국인들이 들어와 어업하게 되면 제주도 여인들은 생업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도민의 고충을 참작하여 제주도에 대한 통어는 당분간 중지해 달라”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



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혼달에는 아랑곳없이 잠수기업자들은 계속 출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총검으로 무장하여 제주어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면 무단 상륙하여 가축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사람을 살상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예로 1887년과 1892년의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들 수 있다.

가파도(加波島)에서 전복을 따던 일본 배 6척이 모슬포(摹瑟浦)에 와서 정박하고 일본 선원들이 제멋대로 상륙하여 촌락에 뛰어 들어와서는 닭, 돼지를 약탈했고 칼을 빼들고 집주인 이만송(李晩松)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으며, 본 모슬포 백성들인 김성만(金成萬), 정종무(鄭宗武), 이흥복(李興福) 등도 구타를 당했다. 그 배에 댄던 40여 명이 달려 나와서 본 모슬포의 기찰장(譏察將) 문재욱(文在旭)을 위협하여 강제로 화해의 증표를 받아내고는 즉시 그 섬으로 돌아갔다.<sup>41)</sup>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핏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쳐 넣는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으로 일본인들을 금지시킬 대책과 섬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sup>42)</sup>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후 1892년 연말 일본인 세끼사와 아끼요시(関澤明清)가 조선 외무주사 이현상(李鉉相)과 함께 제주도에 와서 실시한 ‘제주현지조사보고’에 의하면 “제주도 연해에 모여든 일본의 잠수기선은 도합 70~80척이 되고, 이들은 전복 및 해삼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잠수기업자들이며, 종전에는 매일 전복 생패를 400~500관 쉽게 포획할 수 있었으나 남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루에 130관을 넘는 일이 드물어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자원이 멸종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 어민은 제주도민의 나잠업에 비하여

라 이런 혼달이 있었다.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鬪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69쪽.

41) 『고종실록』 권24, 고종 24년 8월 17일조, 「加波島探獲之日本船六隻, 來泊于摹瑟浦, 任自下陸, 突入村家, 剽奪鷄猪, 拔刀毆打家主李晩松, 卽爲致命. 浦民金成萬、鄭宗武、李興福等, 亦被毆打. 而彼船中四十餘名, 來脅本浦譏察將文才旭, 抑捧相和之證標, 旋即還往該島」.

42) 『고종실록』 권28, 고종 28년 8월 22일조, 「則以爲 日本船無憑標, 忽地到泊, 漁夫之釣魚, 逢輒奪取, 縛打投水. 民人乘船禁斷, 則彼以劍銃多害人命, 突入民家, 威脅婦女, 搶奪糧米衣服鷄猪等, 行悖無所不至, 全島勢將渙散. 日人禁戢之策, 島民奠接之方, 竝請令廟堂稟處矣」.

훨씬 능률적인 방법으로 전복 및 해삼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므로 도민이 일본어민을 증오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일본 어민들이 상륙하면 부녀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거의 별거벗은 채 돌아다니기 때문에 해녀들은 조업 중에 이를 만나면 놀라 도피하였으므로 어획물을 도난당하기도 하고 풍속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43)</sup>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로 진출한 이후 남획행위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고, 이들이 침탈하는 어장은 동서연안으로 이동하여 1892~1893년경에는 동해안의 강원도 및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며, 1899년경에는 서해안 방면으로 다시 새로운 어장을 찾아 북진하였다. 제주도의 연안 어장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고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 수는 더욱 불어났다.<sup>44)</sup>

1899년 제주에 유배와 있던 김윤식은 일본잠수기업자의 남획을 한탄하며 『속음청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어제 고기잡이 일본 사람 수십 명이 성안에 들어와 흩어져 다니며 관광을 했다. 이 가운데서 세 사람이 문경(나인영)과 필담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이는 15세나 글을 잘 하는데, 자기말로 나가사키에 살고 있으며 배마다 하루에 전복을 잡는 게 30 켈미(串, 한 켈미는 20개), 즉 600개라고 한다. 제주의 각 포구에 일본 어선이 무려 3~4백 척이 되므로 각 배가 날마다 잡아버리는 게 대강 이런 숫자라면 이미 15~16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어업에서 얻은 이익의 두터움이 이와 같은데 본지인은 스스로 배 한 척 구하지 못하고 팔짱끼고 주어버리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sup>45)</sup>

잠수기선 외에 구마모토(熊本) 출신으로 전복을 잡는 ‘하다카머구리’의 형태<sup>46)</sup>

43) 김창후, 「세화리 해녀항일투쟁(1932년)의 역사적 배경」 『좁녀풀이』, 1983, 46쪽.

44) 김영·양장자 저 / 정광중·좌혜경,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도서출판 각, 2004), 242쪽.

45) 『續陰晴史』 1899년 8월 29일조, 「二十九日(二十四日己巳晴涼), 昨日魚採日人數十名入城, 散行觀玩, 亦有三入此中, 與文卿筆談(羅寅永), 其中一人年十五善書, 自言居長崎, 每船一日所採鮑爲三十串, (一串爲二十箇), 卽六百箇, 濟州各浦日漁船無慮三四百隻, 而各船日日所採, 率如是數, 已經十五六年之久, 漁利之厚如此, 本地人不能自辨一, 拱手讓與, 豈不可惜」.

46) 이들은 항시 배 안에서 기와하고 음력 7월부터 11월까지 본도 연해를 주항한다. 그 수는 매년 4~5척으로 1척에 15~16명이 승선한다. 보스시스템의 훈련을 받아 건너오는 것으로 채취한 전복은 배 안에서 건복으로 만들어 각자 그 채취고를 기록해 두었다가 귀국한 후 이를 근거로 이익의 분배를 받는다. 단 껍질만은 조업자의 소득으로 각자 평등하게 이를 분배한다. 잠수기선에 비하면 수입이 오히려 많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농상공부편찬, 『韓國水産誌』 제3집 濟州島, 1910, 41쪽.

로 작업을 하는 나잠어업자들의 수입은 잠수기선을 훨씬 능가할 정도였다.

석주명의 기록에 의하면 1900~1903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내에서 이뤄진 잠수기선은 18척에서 30척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sup>47)</sup> 그리고 1904년 일본과 한국 백성들의 어로 규정을 공포하여 한국의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세 도의 연안에서 일본인에게 고기잡이하는 것을 특준 하고, 일본도 역시 하꾸기(伯耆), 인번(因幡), 단마(但馬), 단후(丹後) 및 규수(九州) 연안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고기잡이하는 것을 특준 하였다.<sup>48)</sup> 이는 1883년에 이미 규정된 전라·경상·강원·함경도 등을 포함한 한국의 대부분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허용한 셈이다. 이로 인해 1905년에 제주도연안에 출어하던 일본어선은 200척에 이르러 제주도 어장 남획이 절정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1911년 조선총독부는 잠수기 수를 제한하고, 금어기를 정하는 등의 보호정책을 내놓았지만, 제주도 연안 어장은 이미 황폐해졌다.<sup>50)</sup>

위와 같이 근대기 출가해녀들은 해녀들의 노동력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과 일본 잠수기업자들의 진출로 제주도어장이 황폐화되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이후에는 한반도 북부와 일본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남부지역의 출가가 성행하였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연간 우뚝가사리가 20만근 밖에 나지 않는데 비해, 경상북도 지역은 이의 4배인 80만근이나 생산되었다.<sup>51)</sup>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이것을 채취할 해녀가 없어 해조류 채취시기가 되면 제주도 해녀들이 출가를 가서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이들의 노동력을 받아들일만한 공장시설 등이 충분하지 못했고, 고향에서 밭일을 하거나 잡다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는 빈곤한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몇 개월 동안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도 출가를 자극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제주도의 해녀 수 증가와 출가 소득의 증대, 해녀도구의 발전<sup>52)</sup>,

47) 석주명, 『濟州島隨筆』(보진재, 1968), 172쪽.

48) 『고종실록』 권 44, 고종 41년 6월 4일조, 「韓國特準忠淸黃海平安三道沿岸漁採於日本人民, 日本國亦應將伯耆因幡但馬丹後及九州沿海, 特準韓國人民漁採」.

49) 석주명, 앞의 책, 1968, 172쪽.

50) 김영·양정자 저 / 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도서출판 각, 2004), 243쪽.

51)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77쪽.

52) 1900년대 초부터 사용하던 '쌍안잠수경(족쇄눈)'이 1960년대 들어 '단안경(왕눈)'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1970년대 개량잠수복(고무웃) 등장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육지에 대한 막연함 동경심, 제주도에 없는 생활용품의 구입<sup>53)</sup> 등의 이유로 출가 물질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출가해녀의 기원을 진출배경을 살펴보았다. 제주도 해녀들은 1890년대 경남 부산 목도(牧島)에 첫 출가<sup>54)</sup>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경상도·강원도·함경도 등 한반도 연안 곳곳과 일본<sup>55)</sup>·중국<sup>56)</sup>·러시아<sup>57)</sup>까지 진출했다.

결국 근대기 제주도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생산물의 감소, 자원의 고갈 등은 해녀의 출가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해녀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며 새로운 작업 장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이후에는 이전의 관행대로 한반도의 각 지역으로 진출해서 돈을 벌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53) 처녀들의 경우 혼수 장만 등을 들 수 있다.

54)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3쪽.

55) 일본으로의 첫 출가는 1903년에 일본의 미야케지마(三宅島)의 미에현(三重縣)에 김녕의 뱃사공 김병선(金炳先)이 해녀 수명을 인솔하여 진출한 것이 계기이다. 마쓰다이치지(楸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地理學的 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3쪽.

56) 중국으로의 첫 출가는 우도 출신의 문덕진(文德進)이 1933년 제주에서 미역포자가 붙은 전복과 돌을 싣고 청도(靑島) 바다에 양식하여 성공한 후, 이의 채취를 위한 입어권을 일본 관리로부터 얻어내어 제주도의 상군해녀를 모집하여 진출하였다.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1996, 469쪽.

57)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첫 출가는 구좌읍 행원리의 강예길 해녀가 청진(淸津)으로 출가물질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다시마 캐기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일행들과 함께 다녀왔다. 제주도, 앞의 책, 1996, 466쪽.



### Ⅲ.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

근대기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出稼)는 혼란한 시대상속에서도 적극적인 생계수단의 한 방안이었다. 이들의 뛰어난 물질기량과 작업능력은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한 타 지역으로의 진출요건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해녀들은 출가지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이 장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출가해녀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진출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고, 출가지역에서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조건하에 착취와 수탈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제강점기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

제주도 해녀들이 부산(釜山), 동래(東萊), 울산(蔚山) 등지에 근거를 정하고 출어 입어하게 된 것은 1895년 경 부터이다. 제주도 연해에서 천초의 생산이 성대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육지부 해조업자들이 제주도로 건너와 해녀들을 한 어구에 일정한 임금으로 고용하며 해조류를 채취하기 시작하면 지선에 대하여 채취예(採取禮)라고 해서 술을 제공하고 난 후에야 조업이 시작되었다.<sup>58)</sup>

우선, 일제강점기 출가해녀들의 진출방법과 상황을 살펴보겠다.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와 일본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근대기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일본학자 다구치데이키(田口禎熹)는 1933년 발간된 『조선』이라는 잡지의 「제주도의 해녀」에서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외로 출어하는 경우에는 15명 내지 20명의 해녀와 사공 2명 내외가 일단이 되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안에 대한 출어자는 3~5톤 범선

58)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3쪽.

으로 목적지에 직항하고 경남·강원·함경 각 도 및 일본방면의 출어는 발동선편에 의해 즉각 목적지로 향하는 자도 있으나, 대개는 기선 편으로 부산(釜山)에 이르고 마키노시마(牧の島 : 影島)의 근거리로부터 목적지에 출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출어해녀의 어획물은 주로 우뭇가사리·미역·은행초·앵초·감태재·툇·비단풀·강리(江籬 : 한천원료)·잡초·전복·소라 등의 해초 및 패류이다.<sup>59)</sup>

당시 일본학자들의 기록을 정리하면 출가물질은 보통 음력 2월경부터 시작된다.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쓰시마(對馬島)의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는 대부분 5톤 이내의 범선을 타고 출가하는데 점차 북쪽으로 옮겨 8월말을 한도로 돌아온다. 17~30세의 가장 능률이 높은 해녀들 12~15명 정도가 함께 모집되어 생필품을 싣고, 해녀들도 함께 노를 저으면서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작업할 때는 배안에서 공동생활하며 음료수, 식량, 연료 등은 그곳에서 보충한다. 기선 편으로 황해도·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지로 출어한 이들은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해안가에 간단한 오두막을 지어 생활을 하고, 수익의 대부분은 저축한다.

이후 출가해녀는 해마다 증가하여 1903년에는 일본의 미야케지마(三宅島)의 미에현(三重縣)에 첫 출가를 기점으로, 제주도과 가까운 거리인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對馬島) 등지에 가장 많이 분포하게 되었다.<sup>60)</sup>

1910년경 해녀들의 출가상황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솔자(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솔자는 부산 영도에 거주하며 그 수가 60여명 정도로, 출어지 해조상(海藻商)의 부하에 속하며 해녀의 모집 및 감독을 맡는다. 이들은 매년 음력 12월경에 내도하여 해녀를 모집하고 응모자에게는 전도금을 주어 출어를 계약한다. 출어기간이 되면 해녀는 기선으로 뱃사공, 감독자 역의 남자는 어선으로 본토에 도항하여 부산에서 합류한 후 각지로 떠난다.

59) 다구치데이키(田口禎熹)저·홍성목 역, 「濟州島の 海女」 『濟州島の 옛 記録』(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81쪽.

60) 마쓰다이치지(柗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 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3쪽. 이 외에도 지바현 아와군(千葉縣 安房郡), 시즈오카현 이즈반도(靜岡縣 伊豆半島), 미에현 미나미무로군(三重縣 南牟婁郡), 도쿠시마현 카이후군(德島縣 海部郡), 고지현 아키군 및 하타군(高知縣 安藝郡, 幡多郡), 가고시마현(鹿兒島縣)등 태평양 연안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였다. 다카노후니오(高野史男)저·정광중 역, 「쇠퇴하는 해녀어업에 대하여」 『濟州島史研究』 제11집(제주도사연구회, 2002), 53쪽.

두 번째는 독립출가(獨立出稼)의 방법으로 해녀의 남편 2~3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매입하여 가족이나 친척 등의 해녀를 승선시키는 것이다.<sup>61)</sup> 그러나 대부분의 해녀들은 첫 번째 형태인 인솔자의 모집에 의해 출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독립출가의 방법은 남편이나 친척들이 제주도를 떠나 출가어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어선 마련 등 여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했다. 당시 제주도의 해녀들은 친척이나 마을의 해녀들과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돈벌이 하러 다녀온다는 인식이 강했다.

인솔자들에 의한 출가해녀 모집방법은 1920~1935년 경상남도의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조류의 이용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업자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되자 지선리동에 안주하는 객주업자가 늘어나고 부산 해조상(海藻商: 府內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해조류를 일본으로 수출시키는 일을 주로 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해조상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았다. 그들은 해녀의 모집이나 감독이라 하여 매년 1, 2월경에 제주도에 와서 해녀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응모자에게는 채취물을 유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출어 준비자금이라 하여 해녀들에게 전도자금을 주기도 했다. 혹은 식료품을 대부하여 주고 육지부로 건너가 각 리동에서 채취했다. 채취의 대상이라고 하여 지선민들에 대해 해녀들이 채취한 채취물에서 인출하여 동마다 당시 금액으로 십 원 내지 백 원까지의 금액을 예물로 지불했다.<sup>62)</sup>

『동아일보』 1920년 4월 22일자에는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중요성과 그들의 수입이 제주도 경제에 큰 소득을 올린다고 보도되었다.

매년 바다에 나가서 해조류와 어물을 잡는 여자의 수효는 만여 명에 달하고 그 중에 매년 사월부터 구월까지 부산, 울산 등에 나아가서 활동을 하는 여자의 수효가 사천 명 이상이나 되며, 육칠일 이상이나 물속으로 들어가서 전복과 기타 해조를 따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로 바다 속의 발견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이네의 수입은 한 사람이 평균 삼백 원 값어치를 생산함으로 사천 명의 총수입은 실로 일백이십 만원

61) 후지나가 다케시(藤永 壯)저·홍성목 역, 「1932年 濟州島 海女の 鬪爭」 『濟州島の 옛 기록』(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94쪽.

62)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3쪽.

의 큰돈을 생산하여 실로 조선 수산계에 적지 아니한 숫자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적게 말하면 그네의 활동은 제주도의 생명이고 다시 말하면 조선 산업계에 중대한 현상이다.<sup>63)</sup>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근대기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는 4,000명 이상이 부산, 울산 등지로 활발히 진출했고, 한 사람이 평균 300원의 수입으로 도내 해녀에 비해 2~3배나 많아 제주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의 제주와 오사카(大阪)의 직항로 개설은 해녀들의 일본 출가에 촉매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해녀는 기선에 의해 출가하는데 기선에 의한 일본 본토로의 출가는 쓰시마(對馬島)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사카(大阪)를 경유하였다.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를 경유하던 기존항로에 비해 시간이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고, 배삯도 저렴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누구나 쉽게 일본으로 출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선박들은 섬을 일주하여 일본으로 출항하기 때문에 도민들을 끌어드리는 효과가 컸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까지 해녀들은 기선편이나 철도로 이동시켰다.<sup>64)</sup>

이렇듯 일제강점기 출가해녀들은 인술자의 모집에 의해 전도금을 받고 한반도 각 연안과 일본의 태평양 연안까지 진출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대기 출가한 해녀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 작업함에 있어 나약한 여성이라는 점과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조건하에 이들과 고용관계에 있던 자들에 의한 수탈과 착취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출가해녀들은 일본 중매인과 인술자(객주)들에 의해, 출가지역 어업인들에 의해,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어용화 되어 해녀조합 운영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모진 수탈과 착취를 겪어야만 했다.

첫 번째로 일본 중매인들과 인술자(객주)에 의한 실태를 살펴보겠다.

1915년 에구치(江口保者)가 쓴 「제주도 출가 해녀」에는 일본 중매인에게 고용되어 부산까지 기선으로 왕복하는 제주도 출가해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

63) 「해녀에 일 년 벌이 실로 백만 원 이상」 『東亞日報』(1920. 4. 22).

64) 당시 오사카와 제주도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조선우선(朝鮮郵船), 야마사키기선(尼琦汽船), 가고시마상선(鹿兒島商船)등은 경쟁적으로 여객을 실어 날랐다. 마쓰다이치지(柘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海女」 『改訂版 濟州島の地理學的 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3쪽.

어 있다.

출가물질 하는 기간의 6개월 반(195일) 중 왕복일수 20일을 제외한 175일이 체제일수이고, 이 사이 물질 작업을 한 일수는 87일이다. 1인당 1일평균 채취량은 돈으로 1엔 정도이므로 물질기간의 평균수입은 1인당 87엔이 된다. 물질작업 기간 동안의 식비가 31엔 80전이고, 의류비와 기타 잡비가 6엔 50전, 그리고 입어료(4개소)가 8엔, 어업세가 50전으로 모두 합해서 54엔이다. 총수입의 87엔에서 이 지출 분을 뺀 금액인 33엔이 실제 수입이 된다. … 출가지의 어촌에서 과중한 입어료를 징수당하고 있고 출가해녀의 큰 고통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노동하는 것만 알고 입어료가 과중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역시 이들 동업자가 서로 모여 여론을 만들 기회 없고 빈곤하고 우는 자세를 보면 동정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출가물질 하는 지역에서 작업을 못하는 날이 생기면 앞에서 기술한 수입을 얻기는 불가능하며, 그 중에는 고용주에서 빚을 지게 되어 고국으로 귀향할 수 없는 해녀도 있었다. 이는 부녀자의 몸으로 모든 위험과 곤란을 겪어가며 얻어낸 수입으로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고용주들은 한 지역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장을 다님으로 과중한 입어료를 징수하여 출가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sup>65)</sup>

해녀들을 모집하는 인솔자(객주)들에 의한 폐단은 더욱 심하였다. 출가해녀들은 독립 출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솔자의 손에 의해 모집된다. 인솔자들은 영세한 해녀들에게 전도금(前渡金)을 내어주고 일정한 어장에 일정기간 입어할 약속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 당시 해녀들이 제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도금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일단 전도금을 받아 계약되면 출가가 끝나고 회계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그 해녀는 인솔자에게 얽매이는 실정이었다. 인솔자들은 예정대로 해녀를 모집하려고 하니 남편의 승낙 없이 부인과 계약을 맺어 가정을 파괴시키는가 하면, 미혼의 부녀를 유괴하거나 혹은 전도금에 대하여 높은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은 본남편이나 근친자 등의 감독자 없이 다른 남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출어지역에서 중혼(重婚)을 하는 등 폐해

65) 김영·양정자 저 / 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도서출판 각, 2004), 244~245쪽.



가 적지 않았다.<sup>66)</sup> 또한 생활필수품과 전도금에도 높은 이자를 붙여서 착취하거나 채취물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근량을 속이는가 하면 물품대금을 그때그때 청산하지 않는 등 객주와 상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

당시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면 출가해녀들은 인솔자인 객주들의 횡포와 그 지방 어민들과의 분쟁으로 시달림을 받아 매우 비참한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7)</sup> 해녀들은 객주들에게 예속되어 싫든 좋든 수확물은 모두 객주에게 팔아야만 했다. 객주들의 자금은 거의 일본상인들이 대주고 있어서 이들 상인들은 객주와 결탁하여 해녀들의 채취물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일본인이 세운 해조회사에 넘겼다. 또한 풍기가 문란하여 해녀들이 받은 돈을 가로채어 도박, 주색으로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객주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낭비하였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 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첩(妾)살이 등으로 들어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sup>68)</sup> 이외에도 해녀들이 타고 다니는 어선에는 소위 거간꾼이 있어서, 객주와 해녀 사이에 거간료를 가로채었다. 결국 해녀들이 고생해서 채취한 해조류는 그 가격을 받지 못하고 중간 상인들이 이익을 가로채 버렸다.<sup>69)</sup>

두 번째로 출가해녀들은 출가지역의 어업인들에 의해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1924년부터는 제주해녀들의 출가가 늘고 부산, 동래, 울산 등지에도 지방어업조합이 신설되자 지방어업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출가해녀들에게 그 지방의 어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입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주년’이니 ‘보작이년’ 이니 하는 등으로 불리면서 차별을 받아왔다. 당시 신문보도에서 차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어업조합에서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여 어떤 방면으로 야심을 둔 까닭에 어떻게

66) 다구치데이키(田口禎熹)저·홍성목 역, 『濟州島の 海女』 『濟州島の 옛 記錄』(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81쪽.

67) 해녀들은 이와 같이 반 부랑자가 다된 객주에게 돈을 얻어 쓰고 나중에 썸은 물건으로 하는 것이 예인데 교활한 객주와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농락을 하였는지 실상 백 근 되는 물건을 구십 근만 회계하는 버릇을 만들고 그 외에 도적 눈을 속여서 맨 나중에 해녀의 수입으로 되는 것은 백 근에 칠십 근 밖에 못되며 이것도 객주에서 빚으로 빼앗기는 등 여러 가지로 부정한 수단 아래에 모두 해녀의 수입으로 있지를 못하게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객주하는 사람들은 해녀의 남편을 피이어서 비싼 변리로 돈을 취해주고 해녀가 어물을 잡으면 무리한 헐값으로 비싼 이자를 모두 회계하여 받는 흉악한 수단이 있음으로 해녀는 할일 없이 못된 객주와 일본 사람들의 제 욕심만 차리는 흉악한 수단에 떨어져서 반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한 값도 없이 빈손을 쥐고라도 가게 된 것이다. 「가련한 해녀의 운명」 『東亞日報』(1920. 4. 22).

68) 「조합문제 해결」 『東亞日報』(1921. 3. 19).

69) 「가련한 해녀의 운명」 『東亞日報』(1920. 4. 22).

지 해녀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부산어업조합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경남해안에는 어디로 가든지 입어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제적 수단으로 수없는 압박과 고초를 주어 가며 조합에 가입하기를 권유하였으나 인생의 이름만 띠고 이 세상에 나온 날부터 보고 배운 것은 물 가운데서 헤엄하고 배에서 닻줄 다리기와 노 젓는 것 밖에는 모르는 가련한 해녀들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해녀조합이 있는 이상에는 남의 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연 거절하여 오던 것이 원인으로 작년부터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서 동래군 기장(東萊群 機張) 방면의 어업조합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주 보작(海女)들은 바다 근방에도 발을 못 들여 놓게 한다고 하는 등 갖은 핍박을 받아 왔다.<sup>70)</sup>

이러한 입어문제로 현지에서 차별과 폭행 등의 분쟁이 발생되자 해녀조합 부산출장소에서는 각 방면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25년 “제주도해녀 입어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영향이 미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어용화로 인한 조합의 운영자들에 의한 피해를 들 수 있다. 제주도 해녀들이 출가함에 있어 일본 중매인들의 착취와 인솔자(객주)의 수탈 등 출가해녀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제주도 유지들은 타지에서 해녀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여 1920년에 제주도해녀어업조합(濟州島海女漁業組合)이 설립되었다.<sup>71)</sup> 해녀어업조합은 해녀가 어장에서 물건을 채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주고 채취한 물건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벌이나가는 해녀에게 자금을 유통하는 등 간악한 무리들로부터 해녀들을 보호·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었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설립 초부터 조선식산은행 제주도지점으로부터 3만원의 조합의 자금을 기채(起債)하였고, 출가해녀의 자금유통, 해조류의 공동판매, 풍속개량, 환란구제를 행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sup>72)</sup>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제주도사(濟州島司)<sup>73)</sup>의 제주도해녀어업조합장 겸

70) 「비참애상의 주인공 제주해녀의 생활」 『東亞日報』(1924. 4. 28).

71) 강대원, 『海女研究』(한진문화사, 1970), 79쪽.

72) 「해녀조합의 소식」 『東亞日報』(1920. 6. 1).

73) 1915년 4월 지방관제 개정으로 제주군(濟州郡)은 제주도(濟州島)로 고쳐지고, 군수(郡守)를 대신해서 도사(島司)가 설치되었다. 후지나가 다케시(勝永 壯)저·홍성목 역, 「1932年 濟州島 海女の 鬭爭」 『濟州島の 옛 記録』(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97쪽.

임으로 해녀조합의 성격이 바뀌어 조합의 어용화(御用化)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제는 축산조합, 임야조합, 도로보호조합, 연초조합, 해녀조합, 어업조합 등 다양한 관제조합을 통하여 수탈정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는데, 해녀들이 채취한 해조류는 공동판매 해야 함에도 모두 조선해조회사에 의해 독점판매<sup>74)</sup>되었다. 또한 해녀조합 운영자들은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지정 상인을 만들어 상권을 좌우하고, 각종생산물을 채취하기도 전부터 매입<sup>75)</sup>이 행해졌다. 출가교부금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거두는가 하면 채취물의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과중한 조합비를 징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76)</sup>

이렇듯 해녀어업조합이 어용화 된 후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상권을 일본인과 그 하수인에게 넘겨주어 해녀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주어 해녀들의 불만을 사게 했다. 이러한 해녀들의 불만은 해녀조합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고, 제주도에서는 1932년 구좌,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sup>77)</sup>

## 2. 해방이후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

해방이후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는 일제강점기부터 관행이었던 어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했다. 1950~1970년대 출가해녀들의 상황은 출가물질 경험자의 구술과 1970년대 수협중앙회의 『잠수실태조사』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출가물질은 계절적으로 출가했다가 귀향하는 경우와 외지에 정착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계절적으로 출가했다가 귀향하는 경우를 보

74) 매상고의 50%는 이 회사의 수수료로 지불되고, 18%는 해녀조합의 수수료로 공제되었다. 여기에는 조합비, 뱃사공 임금, 소개인 사례 등을 제하고 나면 해녀의 실수입은 매상고의 20%밖에 안 되었다.

75) ‘선구전제(先口錢制)’는 아직 바닷속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기도 전에 지정상인 들에게 입찰시켜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여 지정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그 대상물건의 지정가격은 시가의 반액 정도로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생산자는 시가를 알면서도 지정가격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은 이윤은 생산자인 해녀들이 아니라 해녀조합과 상인들에게 넘어갔고, 생산자에게 지불한 대금은 완전히 상인에 인도된 후 상당한 시일을 두어 결제하여도 무난하였으므로 해녀들에게는 대금 지불이 상당히 늦어졌다.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31~132쪽.

76)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1996, 519쪽.

77) 박찬식, 앞의 논문, 2006, 131~132쪽.



먼 현지 또는 제주도 출신의 인솔자가 제주에 가서 출가를 희망하는 해녀를 모집한다. 인솔자는 사전에 어장(제1종 공동어장)을 자신이 빈매 하거나 또는 어장의 소유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확보한다. 해녀에 따라 매년 같은 지역에 출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를 데리고 출가하기도 한다. 분배는 4:6제 또는 3:7제의 일정비율에 의해 행하며, 지역적으로 조건이 다르기도 하다.

외지에 정착하는 경우는 출가 작업을 나갔다가 인솔자 또는 현지민과 결혼하여 출가지역에 정착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대다수가 나잠업을 계속하며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현지에서는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거주지 어업조합에서는 출가해녀에 대하여 생업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거의 없으며 조합원 가입도 방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종전에 비하여 자원의 감소되어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생계는 남편 또는 자녀에 주로 의존하고 나잠업은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sup>78)</sup>

출가해녀들의 구술 자료는 1950년대 이전부터 196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의 동해·서해·남해지역에 출가물질을 갔다가 현지에 정착한 제주도 해녀들을 찾아 현지조사를 했다.<sup>79)</sup> 이들은 고산, 용수, 한림, 김녕, 북촌, 중문 등 제주도 전역에 걸쳐 출신지가 다양했으며, 특히 우도출신이 많았다. 출가해녀들은 상군인 경우 돈을 좀 더 많이 벌수 있는 난바르 물질<sup>80)</sup>을 택했다.

○ 김용선 해녀(1929년생)<sup>81)</sup> : 우도 출신, 1940년대부터 출가

19세에 원정물질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선주는 채백년씨로 해녀들을 직접 모집하고 인솔하였다. 12명의 해녀가 뚝단배에서 생활을 하는데, 좁쌀, 된장, 애기구덕 등 필수품을 싣고 다녔다. 인솔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다.

○ 김이산 해녀(1937년생)<sup>82)</sup> : 우도출신, 19세(1956년)부터 안흥으로 난바르를 다님

7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조사부, 『潛嫂實態調査』, 1975, 36~37쪽.

79) 2005년 4월 11~15일, 25~29일 동해·서해·남해안에 제주도 출신으로 현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해녀들을 만나 현지조사를 했다.

80) 난바르 물질은 마을을 한참 벗어난 먼 바다에 가서 작업하는 형태로, 배를 타고 나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업하므로 기량을 갖춘 상군들이 많이 하였다. 침구와 취사용구를 가지고 며칠씩 배에서 숙식하는 물질 방법이다.

81) 김용선 해녀 구술 (79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거주, 2005. 4. 14, 필자 채록).

인천→남해→부산→울산 등지로 다니면서 1년 내내 육지에 밭을 붙일 일이 없었다. 삼대선(돛이 3개 있는 배)에 기관장 1명, 해녀 11명 총 12명이 생활을 했다. 드럼통에 화덕을 만들어 감태, 듬북 등의 해초를 태워 불을 쬐어가며 하루에 2번 입어를 했다. 수입은 배 선주와 해녀가 5:5로, 배 선주는 바다를 사서 해녀를 고용하는데 해녀 몫의 50%에서 출어경비를 공제하여 기관장의 인건비를 준다. 기름과 배 수리비 등은 선주가 당했다. 전도금은 약 10만원(상군은 20~30만원)을 받아서 오는데, 물질 해서 전도금을 다 갚아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 현승여 해녀(1940년생)<sup>83)</sup> : 우도출신, 1957년부터 출가

17세(1956년)부터 강원도 거진, 남해안은 연대도, 비진도등 원정물질을 다니면서 생활했다. 출가물질 갈 때는 인솔자를 따라 좁쌀 등의 생필품을 신고 중문에 배(운반선)를 타고 간다. 섬에 내려 다시 풍선을 타고 작업을 다녔다. 섬에서는 선주가 방을 구해줘서 4~5명씩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 우영애 해녀(1938년생)<sup>84)</sup> : 우도출신, 1957년부터 출가

15세부터 애기상군으로 불리며 우도에서 물질을 했다. 19세(1957년) 해녀배를 경영하는 숙부를 따라 충청도에 초용물질을 갔다. 연이어 육지로 물질 다니다가 23세가 되는 해 결혼을 했다. 남편이 군대간 사이 첫딸을 데리고 충남 안흥에 물질 가서 밭 900평을 샀다. 남편은 제대 후 수협운반선을 탔는데, 운반선을 몰다가 침몰 당하여 집안이 망해 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삼천포, 안흥 등지에 물질을 다니면서 상군으로 워낙 물질을 잘했기 때문에 해녀들 간의 투기로 2개월 만에 쫓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았다.

1960년대 후반 기관장으로 난바르 작업을 다닌 김성운(1938년생)<sup>85)</sup>씨도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26세인 1964년경에 거제로 들어왔다. 결혼 후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1960년대 후반 추정) 우도에 난바르 배가 있어 기관장으로 같이 다녔다. 청산도, 보길도, 매물도

82) 김이산 해녀 구술 (71세,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모항1구 거주, 2005. 4. 13, 필자 채록).

83) 현승여 해녀 구술 (68세, 전남 통영시 미수동 거주, 2005. 4. 26, 필자 채록).

84) 우영애 해녀 구술 (70세, 부산 영도 거주, 2005. 4. 29, 필자 채록).

85) 김성운씨 구술 (70세, 경남 거제시 장목면 궁농리 거주, 2005. 4. 27, 필자 채록).

등지를 다니며 미역, 천초 등을 작업했다. 선주와 기관장, 해녀 16명이 공동생활을 하며, 된장, 간장만 갖고 다니고 야채 등 나머지는 부식은 물물교환으로 섬에서 구했다. 불을 쬐 나무는 섬에 있는 산에 가서 구하고, 뽕감은 가까운 섬에 가서 배를 정박해 나무하러 다녔다. 선주와 기관장, 해녀 16명이 배에서 전부 잠을 자지 못하니 섬의 막창(창고)을 빌어 “뽕막”에서 지냈다. 아이를 데리고 난바르 다닌 해녀도 있는데, 아이를 봐줄 애기업개가 있어야 했다.

1976년 『제주신문』에 실린 「출가해녀의 생업현황」의 기사에는 출가물질 간 온평리 출신의 해녀의 생활을 보도되었다.

두 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고 나면 만조가 되어 수심이 깊어지자 해녀들은 다시 배에 올라타고 서로의 포획물을 자랑하며 그 날의 수입을 어림짐작 해본다. 요즘은 해삼절기 하루 수입은 초순에 3천원, 물지가 익은 중순에는 천원, 하순에는 2천 원 정도(선주 몫 3할을 공제하고) 4년째 나온다는 온평리의 송순선(24세) 아가씨는 차분히 모은 50만원을 오는 8월 집으로 갈 때 송금할 예정이라면서 연지 바른 얼굴을 더욱 붉혔다.<sup>86)</sup>

위의 구술 자료와 신문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출가물질은 보통 인솔자의 모집으로 미역허채를 끝내고 음력 3월에 출발하여 추석(음력 8월) 전까지를 한 어기로 잡았다. 10~15명의 해녀들이 좁쌀, 젓갈 등의 생필품을 싣고 아리랑호, 이리호, 평택호 등 당시의 여객선을 타고 출가지로 간 후 다시 버스를 타거나 배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이들이 해방이후에도 출가물질을 가는 이유는 돈을 벌어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컸다. 또한 가난한 일상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나가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에 결혼을 하지 않은 해녀들이 출가 작업에 호응을 했다. 실제로 출가물질 갔던 해녀들을 만나 왜 출가물질을 다녀왔냐고 물으면 결혼 전에는 물질 가서 번 돈으로 시집갈 혼수를 마련했고, 결혼한 후에는 아이를 둘 셋씩 낳고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출가물질을 다녀왔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86) 「출가해녀의 생업현황」 『濟州新聞』(1976. 7. 1).

다음으로 해방이후 해녀들의 출가지역에서의 수탈과 착취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해녀들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해녀노동을 천대하는 사회의 냉대와 수산당국의 무성의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어업조합 등 수산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행정적 뒷받침이 적어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1950~60년대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제주도 해녀들이 각 지방으로 출가하고 있었다.<sup>87)</sup> 하지만 이들이 출가 작업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으로 지방어업조합의 입어료 인상, 현지에서의 불법 어장매매, 지역어업조합의 불합리한 운영, 악질전주<sup>88)</sup>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를 토대로 지방어업조합의 입어료 인상문제를 살펴 보겠다. 방어진을 포함한 울산군내에는 500~600명의 제주도 해녀가 매년 출가하여 천초, 미역, 패류 등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1인당 입어료는 1955년에 1,000원, 1956년에 1,500원이었다가 1957년에는 3,000원으로 꺾충 뛰었으며, 1958년에는 해녀들의 채취물인 해조류가 전국적으로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4,000원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경남 방어진에 출가한 제주도 해녀들은 입어료 4,000원 징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다.

방어진 출가해녀들의 진정내용을 보면 “금년(1958년)은 해조류 생산이 워낙 감소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작년보다 1인당 1,000원을 인상하여 4,000원씩 받음은 너무 과중하므로 반액인 2,000원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해조류가 흉작인데 입어료를 4,000원 선으로 인상한 것은 울산군내의 각 지구에서 생산품을 완전히 수집한 후에야 대금 지불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해녀들은 호구책이 급하고 월동자금마저 해녀들에게 거의 주지 않고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89)</sup>

이에 대해 경남 어업조합연합회는 “금년 입어료가 작년보다 고율로 징수하고 있다는 울산관내 출가해녀들의 진정을 받고 진상을 조사한 다음, 이의 제지를 위

87) 「경북해녀문제의 현황」 『濟州新報』(1957. 8. 28).

88) 전주는 일제강점기 해녀들을 모집하는 인솔자(객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해방이후에는 바다 어장을 매매한 주인들이 직접 해녀를 모집했는데 이들을 전주라고 불렀다.

89) 1958년 7월 27일 상공부장관, 부산지방, 해무청장, 경남어련 이사장, 울산군하의 방진(方津), 대현(大峴), 온산(溫山), 서생(西生) 등의 어업조합과 동 출장소에 제출하였다는 의견서의 내용이다. 「해녀 괴롭히는 어조」 『濟州新報』(1958. 8. 5).



해 중앙 해무청과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입어료는 전년도 2,000원 정도로 인하 조치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sup>90)</sup> 이렇게 입어료 인상조치는 해녀들의 항의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는 방어진뿐만 아니라 울산 관내의 전반적인 실정으로 출가해녀들의 입어료를 착취하려는 관내 어업조합의 횡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지에서의 어장매매로 인한 착취의 실태를 파악해보겠다. 출가지역에서의 어장매매 행위는 출가해녀들의 권익을 짓밟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경상북도의 어업조합은 공동어장내의 천초, 은행초, 앵초의 채취행사권을 입찰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써 어업조합의 사업자금을 충당하였다. 이처럼 공매한 경우는 공동어장내의 해조류채취를 해녀들이 채취하고자 하더라도 매수자가 엄금하고, 조합원이 행사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sup>91)</sup>

수산업법 제10조(공동어업면허)에 의하면 당연히 공동어장 매매를 금하고 있었지만 지선수협에서 지방유지인 곽암주(藿岩主)<sup>92)</sup>에게 이를 팔아넘기는데서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 지역 어장에는 천초·은행초·앵초 등 값진 해조류가 상당히 많았으나 이를 캐어낼 해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협에서는 곽암주에 상당한 행사료를 받고 어장을 팔아버렸다. 곽암주는 이 해조류를 캐내기 위하여 인솔자(객주)를 제주도로 보내고 해녀들을 모집하여 근당 얼마씩의 요금을 받고 채취하였다. 해녀들이 받는 요금은 당시 시세로 보아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액수였다. 더구나 입어행사료, 어협수수료, 지도원수당, 위탁판매수수료, 제잡비 등의 명목으로 이중삼중 뜯기고, 채취물을 저울질할 때 그 근량을 속여 실제 채취량의 몇 분의 1을 가혹하게 떼어버리기도 하였다.<sup>93)</sup> 이러한 일은 이미 1954년에 제기된

90) 「입어료 인하에 협조」 『濟州新報』(1958. 8. 17).

91) 좌혜경, 「제주 출가해녀의 현지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228쪽.

92) 19세기 말부터 제주해녀가 가장 많이 진출했던 경상도 지역의 어장은 미역 채취업이 발달하여 곽암(藿巖)이라는 미역바위와 곽암주(藿巖主)라는 소유자가 있었다. 이것을 미역밭이라고 부르듯이 암석으로 고정되어 특별한 시설이나 자본투자가 필요 없어 개인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마을 유력 양반이나 재산가였다.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81쪽.

93) 그들은 예년 우리들 제주도 출신 출가해녀들을 고용하여 수렴한 대금으로 채취케 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상이다. 작년 산 해조류에 있어서는 그 채취료로서 은행초 원료 매 100근당 100원, 천초원료 매 100근당 320원을 우리들에게 지불하였다. 은행초 원료 350근은 제품 100근이 될 수 있고 천초원료 300근은 제품 100근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가격에 비추어 행사료 매수대금, 채취료, 기타를 공제하고도 부당한 이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천초원료 350근을 제품 100근으로, 은행초 원료 400근을 제품 100근으로 계산할 것을 고집하여 우리들을 착취한 것이다. 「해녀분쟁의 진상, 상공부 장관에게 보낸 진정에서」 『濟州新報』(1954. 6. 9).



현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1959년에는 경북재정지구내 각 어업조합이 모두 1종 공동 어장을 이미 전년도에 상인들에게 공매<sup>94)</sup>하고, 어장을 매수한 상인들은 제주도에 들어와 출가해녀들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해녀들은 상인들과 고용관계가 되어 채취기가 되면 계약된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곽암주들은 은행초가 백 근 당 1만 7천원에 팔리는데도 이를 캐어낸 해녀들에게는 임금조로 7천원을 주었고, 천초는 백 근 당 1만 6천원에 팔리지만 6천2백원 만을 지급하여 채취물의 3분의 2 정도를 불로취득(不勞取得)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너무 억울한 해녀들은 대구 지검에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당시 1959년 6월 22일 『조선일보』에는 재정지구 어업조합이 천초와 은행초에서 얻어지는 중간 소득은 연간 5천6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출가해녀의 수탈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도되었다.<sup>95)</sup>

종래의 관행이 있는 어민이면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 누구든 지방장관의 인가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입어료만 지불하면 자유로이 입어할 수 있는데,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가냘픈 해녀의 벌이를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바다의 어장을 국가의 영해를 상행위로서 매매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그 가격이 수백만 원으로부터 최고 천여만 원에 이르기까지 각 어업조합원이 어장을 매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상한 일이 아니며 법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당시 신문은 전하고 있다.<sup>96)</sup>

1956년 상공부장관의 재정이후 경북재정지구에서는 제주도지사가 발급하는 출가증을 가지면 자유 입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셈인데, 그것도 순조롭지 못했다. 재정지구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재정사항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계속 어장을 매매함으로써 출가해녀들을 골탕 먹여 왔다. 암암리에 고용채취에 응하도록 가하는가 하면 자유입어의 형태를 취한다 해도 인솔료 등의 잡부금을 공제하고 검근에 있어 저울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녀들의 이익을 수탈했다. 그런 때문에 출가기간 동안 가지고 간 좁쌀이나 보리쌀에 된장국만 먹으며 5~6개월 동안 일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주머니는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sup>97)</sup>

94) 「잠수의 현주소」3 『濟州新聞』(1975. 6. 13).

95) 「피땀 흘려 남 좋은 일」 『朝鮮日報』(1959. 6. 22).

96) 「어장문제와 해녀의 권익문제」 『濟州新報』(1959. 3. 27).

97) 「해녀현황과 문제점」 『濟州新聞』(1970. 5. 2).

다음으로 현지 어업조합원들의 무능으로 인한 출가해녀들의 이중부담 실태를 살펴보겠다. 1957년부터 포항에 제주어업조합연합회 경북출장소를 설치하여 출가해녀들에 대한 사무를 장리해오고 있는데, 이 출장소는 현지 어업조합원들을 견제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출가해녀들의 수탈에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출가해녀들로부터 유지비 명목으로 ‘구전(口錢)’을 받고 있어 해녀들은 이중의 부담을 겪게 되었다. 이런 출장소의 무능으로 지선해녀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명목으로 25%의 입어료를 징수 하고 경북출장소 유지비로 7%, 인솔자에게 15%를 바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무질서하고 불법성이 많이 내포한 출가업무 때문에 상공부장관 재정으로 1,070명의 입어인원이 책정되고 있는 경북 5개 어업조합 내 정식 출가증을 가지고 출가한 해녀는 1957년 750명, 1958년은 더욱 줄어 450명이었다. 대부분의 해녀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밀 출가하여 채취품을 싼값에 팔아버리는 현지의 착취방식인 요금채취제<sup>98)</sup>를 감수하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나오기도 하였다.<sup>99)</sup>

또한 경북 수산단체에서는 양도간의 협정을 실행하는 척하며 제주어련과 출가해녀 이간책을 조장하고, 상조회에서는 사전에 대금을 결정하여 현금 지불한다는 미명하에 수년전의 요금제를 실시하여 제주도의 계획출가를 이모저모 방해하고 있었다.<sup>100)</sup>

마지막으로 출가해녀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악질전주들에게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며 작업하는 실태를 살펴보겠다. 그 사례들은 당시의 신문기사 보도내용과 현지조사를 통한 구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도에는 충남 보령군에 출가한 구좌면 김녕리 출신 20여명이 악질 전주에게 무인도에 감금당해 집단폭행을 당했다. 또 1962년에는 부산 대천동의 출가해녀 30여명이 작업능률이 낮다는 이유로 곽암주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sup>101)</sup> 1966년 5월에서 8월까지 경남 통영군 한산도에

98) 요금채취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선일보』 기사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경상북도내 어업은 그들 어장을 ‘생산책임제’란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보증금(금년은 백 근당 1천 원씩)을 받고 관리권을 부여(사실상의 어장매매)한 다음 그 객전인이 내세운 인솔자를 지도원이란 이름으로 수협에 추천한다. 수협이 지도원으로 임명한 45명이 제주도에 파견되어 1,070명의 법정인원을 모집해 가는 한편, 관리권을 장악한 특정인은 밀 출가 해녀를 고용해 요금채취(수조를 혈값으로 사들이는 것)를 시킨다. 「출가해녀들의 생산책임제」 『朝鮮日報』(1966. 7. 21).

99) 「서름은 해녀들에게만, 영망인 경북 출가 업무」 『濟州新報』(1959. 4. 17).

100) 「경북해녀 출가문제 현황」 『濟州新報』(1957. 8. 28).

출가물질 갔던 제주해녀 14명이 악덕 전주에 의해 구타까지 당하며 일을 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제주도는 법에 호소하고, 경남 경찰국에 악덕 전주를 고소하였다.<sup>102)</sup>

1969년에는 출가증 없이 경상남도 욕지도로 물질을 간 제주해녀 10명도 현지 관암주들에게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고 미역채취 노임을 1/10도 못 받아 막심한 생계 난에 허덕이다 제주도 당국에 알려 보호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일도 있었다.<sup>103)</sup>

현재 경남 통영에 살고 있는 정성준(1941년생)씨는 당시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수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통영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제주해녀들이 있었다. 한산도, 비진도, 대머리, 죽도, 매물도등 각지에 인솔자가 인솔해서 10~20명씩 해녀들이 와서 천초와 미역을 채취했다. 현지인들의 텃새가 심해 처녀들은 섬에서 못 나가게도 하고, 밤에 몰래 해녀들의 숙소로 침입하는 등 설움을 많이 받았다. 또, 전주가 해녀들의 뭇을 계산을 안 해줘서 음력 8월 추석에 제주도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sup>104)</sup>

이렇듯 출가해녀들은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낯선 타지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악질전주의 학대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지내야만 했다.

『제주신문』 1976년 7월 1일자에는 충청남도 서만(瑞灣)으로 출가물질 간 제주해녀들의 고충이 실렸다.<sup>105)</sup> 이들은 제1종 공동어장에 양축장 시설의 허가를 받

101) 「잠수들의 현주소」3 『濟州新聞』(1975. 6. 13).

102)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257~259쪽.

103) 「출가잠수 또 수탈, 욕지도에 연간 10명 보호 요청」, 『濟南新聞』(1969. 9. 18).

104) 정성준씨 구술 (67세, 경남 통영시 미수동 거주, 2005. 4. 25, 필자 채록).

105) 수산업법상 제1종 공동어장은 어디까지나 지선(地先) 어민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곳은 제1종 공동어장이 없었다. 모 고위척의 모 비서의 조카라는 젊은이와 이 젊은이를 업고 나타난 중년 한 사람이 방포(芳浦)항 10여ha 중 2ha에 부표를 띄워놓고 양축장(養畜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초 이들은 승연리 어촌계를 찾아와서 양축장 시설에 따른 지선민의 동의를 구하면서 현장작업(포획)은 지선민들에게 맡길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막상 군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은 여태까지 양축장 시설은커녕 지선 해녀들의 고용을 피하고 완전 장비를 갖춘 특수 잠수대를 외부에서 불러들여 방포 전 지역을 마구잡이로 휩쓸고 있다. 또 이들은 60마일 밖의 무인도에도 움막을 쳐서 사람이 사는 양 꾸미고, 양축장이란 명목으로 불법 접거, 해녀의 접근을 급하고 남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배를 타고 사실상의 공동어장인 양축장을 지나 10m 밖의 수심에서의 작업은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부표 가까이서 작업을 하던 양미자 여인은 배를 타고 쫓아온 이들에게 머리통을 얻어맞고 현장에서 테왁을 뺀 채 사흘이나 작업을 못나가고 있었다. 현청자 여인도 테왁을 뺀기고 고소까지 당하였으나 후환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었다. 「출가해녀의 생업현장」

았다는 이유로 잠수기 어선을 투입하여 해녀들이 채취한 물건을 다 채취해 버리고, 근처에서 작업하던 해녀들 역시 피해를 받고 있었다.

이상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를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 본토와 일본 등지로 진출하면서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고용관계에 있던 일본 중매인에 의한 수탈과 객주들에 의한 수탈로 해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결성된 해녀어업조합이 어용화되면서 출가해녀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해방이후에는 관행대로 한반도의 동해·서해·남해안 각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어려운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는데,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 분쟁 등 지방어업인과의 마찰이 일어났다. 이외에 지방어업조합의 입어료 인상, 현지에서의 불법적인 어장매매, 무능한 어업조합 운영, 악질전주의 수탈 등 제주도 해녀들의 수탈과 착취 실태는 출가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

『濟州新聞』(1976. 7. 1).

## IV.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 실상

제주도를 떠난 출가해녀들이 입어<sup>106)</sup>할 수 있는 바다어장은 한계가 있었다. 1909년 법률 제29호 어업령이 공포되었고, 1912년 2월 3일 새로운 어업령이 조선 총독부령 제15호로 공포되었다. 어업령에는 입어(入漁)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전용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이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전용어장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sup>107)</sup>

이렇듯 공동어업의 어장 내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해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출가해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한반도 각 연안의 바다어장을 개척하여 자원을 채취해온 것으로 입어관행은 인정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방어업인들과의 입어관행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법적분쟁까지 제기되어 출가해녀의 진출양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들의 실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시기상 일제강점기 입어 분쟁 후 1930년대의 출가해녀 변화,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 입어관행 분쟁 후 1950~60년대 변화, 1960년대 후반 입어관행 소멸 이후 1970년대 변화 양상을 파악하겠다.

### 1. 일제강점기 입어 분쟁 후 변화

106) 현재 수산업법에는 ‘입어(入漁)’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고, ‘입어자(入漁者)’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107)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83~84쪽.



일제강점기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일본인 무역상의 등장으로 상품가치가 높아져 소득이 증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잠수기업자들의 남획으로 제주도 연안 어장은 자원이 고갈되어 황폐화되자, 해녀들은 제주도어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조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타 지역 어장의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은 지역의 어민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다어장을 개척하는 일이었다. 또한 당시 여성들이 나잡업을 한다는 것은 유교적 사회에 물든 한반도의 여성들에게는 전통적인 관습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녀어업이나 그 전용권이 설정되지 않아 출가입어(出稼入漁)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sup>108)</sup>

지역어업인들이 어장 내 해조류 채취 등 어업이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녀들의 입어를 문제 삼을 때는 이미 제주해녀들이 연안에 진출하여 확고한 기반을 다질 때쯤으로 관행이 인정되는 부분이었다.<sup>109)</sup> 그러나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의 어장으로 진출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든지 지방 어업인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근대기 출가해녀들의 입어 분쟁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해결책은 어떠했으며 출가해녀들은 어떤 변화양상을 보였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김수희는 출가한 제주해녀들이 일본 해조상과의 고용관계에 있어 일본권력의 비호아래 한반도의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작업하는 것이 본격적인 입어 분쟁이 있기 전부터 지역어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고 했다.<sup>110)</sup>

그 주장을 살펴보면, 19세기 말엽 일본인 해조상 아래 있는 일본해녀들과 잠수기어민들은 경남 울산등지에 해조류 채취를 위해 진출하여 지역어민들과 큰 분쟁을 일으켰다. 일본정부는 이곳에 일본인 관리를 급파하여 일본인들의 어업을 방해한 조선인 곽암주와 지역 주민들을 제압하고 곽암주의 재산을 전액 몰수하였다. 곽암주들은 국가 권력이 부재하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의 무능력

108) 원학희, 「濟州 海女漁業의 展開」 『地理學研究』 제10집, 1985, 181쪽.

109) 마쓰다이치지(槲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 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5쪽.

110)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81~83쪽.

함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행사할 수가 없었고, 연안 어장에서 일본 해녀들이 천초, 미역 등을 어획해도 반대를 할 수 없었다.<sup>111)</sup>

일본국가의 권력 아래 일본어민들은 한반도의 어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들도 일본인 상인의 옹호를 받으면서 울산지역에서 해조류 채취를 하고 있었다. 제주해녀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갈등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 이때 일본인들은 어장사용료로 해녀어획물의 일부를 마을 주민에게 사례하였고 이것이 관행이 되어 울산군 및 각 부근 연안에 매년 제주해녀들은 어업을 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12)</sup>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타 지역으로 진출함에 있어 본격적인 입어 분쟁은 1911년에 처음 기록되었다. 경남 울산군(蔚山郡) 장생포(長生浦)에 거주하는 일본인 야스도미(安富暢態)란 자가 일본에서 한천(寒天)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군 연안에서 생산되는 천초, 은행초 등의 채취권을 얻었다. 그는 많은 잠수부<sup>113)</sup>를 고용하여 한꺼번에 채취케 할 대규모의 설비로 생산할 것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912년 5월 채취기에 울산군의 각 마을은 야스도미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인 해조상의 부하인 객주들이 모집하여 온 제주도 해녀들의 입어를 거절하였다. 결국 제주도해녀와 지선민들 간에 소동이 벌어졌는데, 울산과 부산 헌병의 출동으로 겨우 진압하였다.

이 입어 분쟁은 단순히 울산군 연안 어업인들과 출가해녀들의 분쟁이 아니라 일본인 야스도미와 부산 해조상 간의 상권 확보를 위한 싸움으로 여기에 지선동민과 출가해녀들이 달려든 셈이다. 이 사건은 지선주민과 야스도미가 계약한 것

111) 우뭇가사리는 조선인들도 많이 채취하는 것으로 어장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적지 않다. 특히 진보한 어장에서는 통어장정 중 어개류를 포획하여도 되지만 조(藻)라는 글자가 없어 입어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우뭇가사리, 미역, 가사리를 채취할 권리가 없다고 출어를 금지하고 있다. 이 어업은 각 분쟁 중 귀찮은 사건 중 하나로 지금까지 본회는 어느 곳에서나 타파하여 아무런 불편 없이 어업을 하고 있다.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81~83쪽.

112) 김수희, 앞의 논문, 2006, 81~83쪽.

113) 제주도 해녀를 제외한 지선 어민 및 미에현의 해녀들이었다. 미에현(三重縣)의 이세(伊勢) 지방 해녀들도 한반도로 진출했었다. 1880년대부터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일본인 해조류 판매 상인들이 일본으로부터 이세(伊勢)지방의 해녀를 데리고 들어와 경상남도 방어진, 울산군의 포항 정자포(亭子浦) 등지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게 했다. 그러나 1895년 제주해녀의 한반도 진출 이래 거의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제주해녀들은 분동이나 사공, 해녀배 없이 테왁망사리만으로 깊이 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취 비용이 싸고,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물질작업 능력이 높다는 여러 조건 때문에 점차 이세해녀들은 축출을 당해 1929년 이후 조선반도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카노후니오(高野史男)저·정광중 역, 『쇠퇴하는 해녀어업에 대하여』 『濟州島史研究』 제11집(제주도사연구회, 2002), 52쪽.

을 해약하게 함으로써 출가해녀와 지선주민간의 분쟁은 일단 원만한 해결을 보았다.<sup>114)</sup> 이 분쟁이후 울산에서 어업조합을 설립<sup>115)</sup>하게 되었고,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제6종 면허어장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해녀가 울산 관내 어장에 진출함에 있어 일정한 입어료<sup>116)</sup>만 납부하면 입어할 수 있는 입어관행을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출가해녀 인원 제한 및 입어료 때문에 분쟁은 계속되었다.

석주명이 쓴 『제주도수필』에 의하면 1915년 출가해녀 수는 2,500명으로 경남에 1,700명, 전남 다도해에 300명, 기타 500명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1911년의 울산의 입어분쟁으로 인해 입어료만 납부하면 입어관행을 인정받아 출가해녀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녀들의 출가지역도 대부분 입어관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남 지역으로 진출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들어서도 입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1921년에는 제주도 해녀가 예전부터 관행이었던 울산 및 동래군 연안의 해조류를 채취했었는데, 지선민과의 분쟁으로 채취권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제주도 해녀와 울산, 동래 어업간의 문제가 되었으나, 점차 해녀들과 부산지방 해조상간의 문제가 되었다.

해조문제는 예로부터 관행이 있는 제주도의 해녀가 울산 및 동래군 연안의 해조를 채취해야 오던바 현지주민은 해녀가 되어서 이의 채취에 종사하는 자가 없어 해중의 이권을 해녀의 손에 의하여 개발되어야 그 지원민 간접으로 이익을 얻었는데 돌연히 어업규칙에 의하여 지원민에게 그 채취권을 주게 되어 이전부터 채취하여 오던 제주도해녀의 이권을 인정치 아니하게 됨에 따라 최초에는 제주도의 해녀 대 울산 동래 어업간의 문제가 되었던바 점차 목질이 변화하여 근자에는 해녀 대 부산지방 해조무역상간의 문제가 되었으니 종래해녀 모집 출가하여 자급의 전대등으로부터 해조취인상에 달하는 각종의 폐해가 있어 고로 해녀의 수익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해조무역상도 역시 연년 자급의 회수가 곤란 하는 등의 사실이었다.<sup>117)</sup>

114)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5쪽.

115) 1913년에 울산군 서생면(西生面) 외 4개 어업조합과 동래군 기장어업조합이 설립 인가되었다.

116) 제주도 해녀로부터 울산군은 1명당 4원 30전, 동래군은 3원 50전으로 입어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산출기 초는 야스도미가 지선민과 계약한 3,200원은 당시 입어자수 744명으로 분할한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입어료로 계산하였다.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100~111쪽.

117) 「해녀문제 남선어업계 대 현안」 『東亞日報』(1921. 4. 18).

이러한 지방 어업인들과 제주도 해녀들의 해조류 채취와 입어에 관한 충돌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1925년 2월 “제주도해녀 입어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제주도 해녀들이 경상남도에 출가하여 작업함에 있어 수년간 양도 당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지도 모르는 제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당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때부터 제주도 해녀의 입어권은 법률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협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주도 해녀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으로 입어하며, 이 지역 내에서 제주도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조류는 지방어업조합·제주도해녀어업조합·조선해조주식회사 등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경비는 해조공동판매경비 중에서 지출한다. 천초공동판매수수료는 매상고의 8%로 하고, 공동판매에 필요한 제경비는 여기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또한 부산, 동래 각 부근 연해에 입어할 제주도 해녀 조합원수를 부산부 250명, 동래군 650명, 울산군 812명, 총 1,712명으로 정하고, 부산부 1인당 3원, 동래군 1인당 5원 20전, 울산군 1인당 5원 20전의 입어료를 납부하면 입어관행을 인정받게 되었다.<sup>118)</sup> 또한 조선 어업령 제정에 따라 제주해녀어업조합의 이름으로 한반도 전역에 입어관행보존등기(入漁慣行保存登記)<sup>119)</sup>를 함으로써 조합의 이름으로 입어권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출가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 육지부로의 어장확대를 보장받게 된 셈이다.

또한 ‘제주도해녀 및 지선민이 채취하는 해조공동판매에 관한 협의’를 하여 해녀들이 채취한 물품의 공동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독려원을 두기도 했다.<sup>120)</sup>

한편 위의 입어 분쟁의 결과 현지에서 입어료만 내면 입어를 할 수 있다는 관행이 인정된 것은 해녀들이 내는 입어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 입어에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21)</sup>

이와 같이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1930년대부터는 출가해녀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한반도 각 연안뿐만 아니라

118) 경상남도, 『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1920~1935, 19~21쪽.

119) 마쓰다이치지(槲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 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25쪽.

120) 제주도 해녀 및 지선민이 채취한 물품의 공동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독려원 10명과 공동판매 사무처리를 위한 전속서기 1명을 두었다. 경상남도, 앞의 책, 1920~1935,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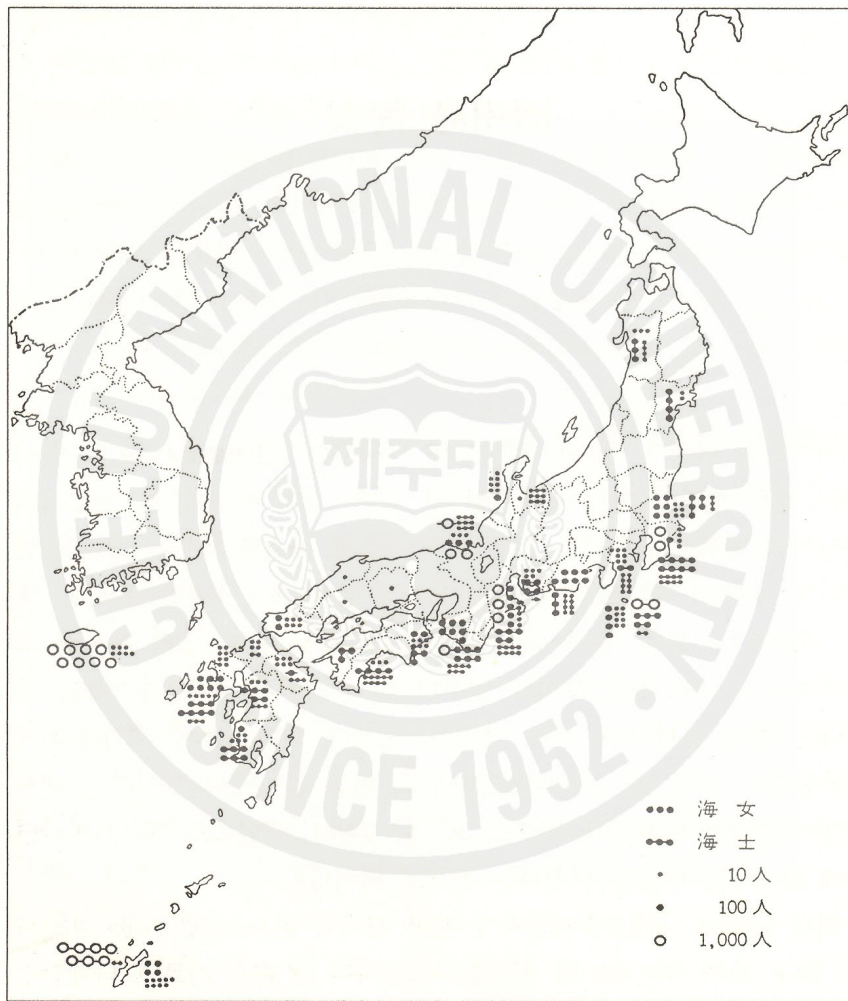
121)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8쪽.



일본으로의 출가도 급증하여 이들의 이동경로도 점차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으로의 출가는 잠수기술과 능력을 인정받아 1903년 처음 진출한 이후 진출한 이후, 고용관계에 의해 점차 증가하여 1930년대에는 1500~16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림 1> 1931년 나잠어업자의 국내·국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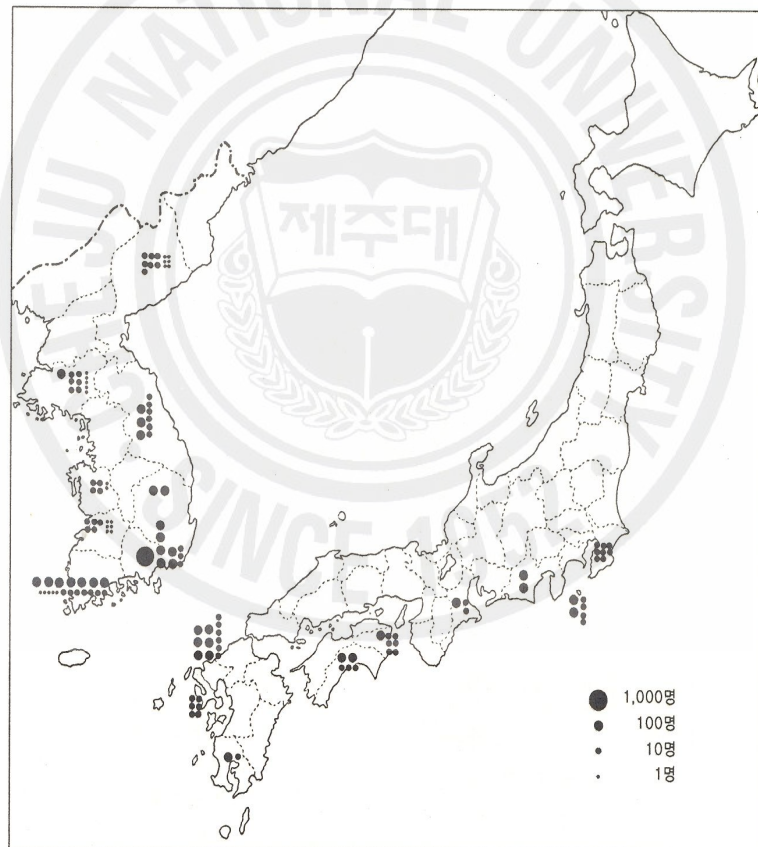
※ 자료 :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04쪽 재인용.

<그림 1>은 1931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나잠어업자의 분포이다. 일본에서는 남자 나잠어업자를 해사(海士), 여자 나잠어업자를 해녀(아마, あま, Ama) 라고 부



른다.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 해녀가 8,000여명 있으며 일본은 해사는 18,000여명, 해녀가 13,000여명으로 해사가 해녀보다 많다. 해사는 오키나와에 7,000여명으로 33%를 차지하고,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합하면 제주도에 8,000여명으로 전체 해녀의 40%를 차지했다. 마쓰다이치지는 “제주도는 옛날부터 조선의 한 지방으로서 동일 행정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부에 있어서 한 사람의 해녀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여성이 일반적으로 농거적(籠居的), 비활동적 여성이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제주 여성만이 갖는 독자적 지역성이며 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sup>122)</sup>

<그림 2> 1932년 제주도 출가해녀 국내·국외 분포



※ 자료 :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32쪽 재인용.

122)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저·홍성목 역, 『濟州島 海女』 『改訂版 濟州島の 地理學的研究』(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103~105쪽.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1932년 제주도의 출가해녀 수는 5,000여명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3,337명, 일본에 1,860명이 출가하였다. 1932년 제주어업조합의 조합원이 8,800여명에 이르니, 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출가한 셈이다.

또한 1933년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한반도 일대의 해초부작으로 일자리를 찾아 상당수의 해녀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보도되었다. 그 수는 쓰시마(對馬島)에 약 500명, 오사카(大阪) 부근에 약 200명, 고지현(高知縣)에 50~60명, 동경(東京) 부하에 60~70명, 시즈오카현(靜岡縣) 하에 100명, 미에현(三重縣) 하에도 상당한 수가 있으며, 한반도 연안에도 경북에 600명, 함경남도에 300명, 그 밖에 서해안에도 상당히 퍼져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sup>123)</sup>

그리고 1937년 「제주도세요람」에는 부산 일대에 물질 나가기 시작한 제주해녀들은 멀리 청진(淸津)에 이르기까지 점차 북상하여 다도해 전라남도 연안과 충청도, 황해도 등 한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까지 뻗어 갔다고 기록되었다. 「제주도세요람」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제주해녀들의 본격적인 도외출가는 19세기 말에 비롯되었고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에 뻗었다는 사실, 도내 연안에서 물질하는 해녀는 약 5,300여명으로, 도외 출가한 해녀를 합쳐 전체해녀는 약 10,300명쯤 된다는 것, 도외출가로 벌어들이는 총 어획고는 제주해녀 어획고의 70%에 이른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sup>124)</sup>

다음의 <표 1>은 1930년대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123) 「불황과 부작으로 도항해녀 천여 명 입어장소 따라 일본도항자격증」 『朝鮮日報』(1933. 5. 5).

124)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1996, 438쪽.

<표 1> 1930년대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인원 : 명)

1932년				1937년				1939년			
한반도		일본		한반도		일본		한반도		일본	
전남	775	쓰시마 (對馬島)	660	전남	408	쓰시마 (對馬島)	750	전남	367	쓰시마 (對馬島)	686
전북	56	고지 (高知)	230	전북	19	고지 (高知)	130	전북	7	고지 (高知)	95
경남	1,663	가고시마 (鹿兒島)	110	경남	1,650	가고시마 (鹿兒島)	55	경남	1,581	가고시마 (鹿兒島)	18
경북	200	미에 (三重)	120	경북	473	도쿄 (東京)	215	경북	308	도쿄 (東京)	144
충남	42	나가사키 (長崎)	60	충남	110	나가사키 (長崎)	65	충남	141	나가사키 (長崎)	54
강원	360	시즈오카 (靜岡)	200	강원	54	시즈오카 (靜岡)	265	강원	60	시즈오카 (靜岡)	365
함경 남도	76	지바 (千葉)	80	함경 남도	32	지바 (千葉)	51	함경 남도	106	지바 (千葉)	67
함경 북도	-	가나가와 (神奈川)	240	함경 북도	5	에히메 (愛媛)	10	함경 북도	-	에히메 (愛媛)	35
황해	165	도쿠시마 (德島)	160	황해	50	도쿠시마 (德島)	50	황해	14	도쿠시마 (德島)	28
합계	3,337	합계	1,860	합계	2,801	합계	1,561	합계	2,584	합계	1,492

※ 자료 : 1932년 통계수치는 <그림 2>의 1932년 제주도 출가해녀 국내·국외 분포  
1937년·1939년 통계수치는 「제주도세요람」의 표를 재작성.

<표 1>에서 보듯이 1930년대에는 약 4,000여 명의 해녀가 매년 여기에 인솔자의 고용계약에 의해 출가물질 작업을 했다. 1937년에는 한반도의 대부분 거리가 가까운 경남, 경북, 전남 연안과 일본의 쓰시마(對馬島), 시즈오카(靜岡)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지역에 집중되었다.

일제강점기 출가해녀들이 제주도 해녀어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출

가해녀가 제주도에서 작업하는 해녀들보다 2배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어 제주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역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녀에게 채취료를 주더라도 해녀를 고용하는 것이 마을경제에도 보탬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 해녀들은 미역을 제외한 다른 해산물도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sup>125)</sup>

출가해녀들은 열악한 생활을 하였으나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생활로 저축해 수입금은 제주도의 가정으로 보냈다. 그 수입은 1929년 당시 제주도내의 해녀 7,300명이 약 25만 엔을 벌어들인데 반하여, 일본으로 출가한 해녀 3,500명이 40만 엔 정도를 벌어들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해녀가 많이 분포한 구좌면, 성산면의 경우 해녀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나 될 정도였다.<sup>126)</sup> 당시 출가한 해녀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도내의 해녀수입 보다 2~3배나 많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제에는 더없이 중요한 공헌을 한 셈이다.

## 2.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의 입어관행 분쟁 후 변화

해방이후 해녀들의 출가물질은 17세 이상의 해녀들이라면 한번쯤은 나갔다 와야 하는 관행처럼 퍼져나갔다. 일본과 한반도 북부지역으로는 출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제주도 해녀들은 점차 한반도의 남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해녀들의 출가가 집중되었고, 출어지에서의 입어권을 둘러싼 현지주민과의 분쟁이 잦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의 입어관행 분쟁으로 인한 출가해녀들의 변화양상을 고찰해보겠다.

‘경북재정지구(慶北裁定地區)’는 제주도 해녀들이 해마다 출가하는 경상북도 구룡포(九龍浦)·감포(甘浦)·양포(良浦)의 3개 어업협동조합 관내 제1종 공동어장으로, 이 시기 제주도 해녀의 수탈이 본격적으로 야기되었던 곳이다.<sup>127)</sup>

125)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7쪽.

126) 박찬식, 「제7장 일제강점기 도정과 민생」 『濟州道誌』 제2권(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631쪽.

Ⅲ장에서 밝혔듯이 출가지에서의 어장매매, 입어로 인상, 지방어업인들과의 입어관행 분쟁 등 크고 작은 마찰은 계속되고 있었다.

1953년 조선어업령을 대신할 수산업법 제정 이후 해녀들의 권익을 염려하던 본도 출신 인사들이 나잠업을 독립된 수산업종으로 인정하고 입어관행권을 문명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요구가 관철되어 수산업법에 규정됨으로써 권익보호의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었다.<sup>128)</sup>

수산업법 제40조(입어의 관행)를 보면 “공동입어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종사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고, 공동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에 대한 분쟁은 항상 뒤따랐다. 수산업법상으로는 관행에 의한 자유입어가 뚜렷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실은 값싼 요금을 받고 천초를 캐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익을 수탈당해 온 것이 경북지구 출가해녀들의 실태였다.<sup>129)</sup>

1954년 4월 출가해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던 중 어업조합 서기로 있던 김종대씨는 스스로 해녀대표를 자처하여 감포, 양포, 구룡포에 출가하는 해녀들의 입어관행 인정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상공부당국의 진상보고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연안 일대 어업조합 향유 공동어장내의 해조류는 수십 년 내내 제주도 출가해녀가 채취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어업권자인 당해 어업조합도 이 사실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우리들 출가해녀가 아니었더라면 해조어장은 개척될 수 없고 또한 이 실물들은 그대로 썩어 빠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을 것이므로 실로 이 어장의 개척자는 제주도 출신 출가해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은 수산업법 제40조,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입어할 수 있는 관행자임을 주장한다.<sup>130)</sup>

127)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77쪽.

128) 「잠수들의 현주소」2 『濟州新聞』(1975. 6. 12).

129) 가까운 예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당 17, 18원 꼴로 팔린 천초(수초)를 겨우 반값인 8, 9원의 요금을 받고 채취해줌으로써 해녀가 벌어야 할 막대한 돈이 지선의 몇몇 특정인들에게 빼앗기는 결론을 초래하게 되었다. 「해녀보호지도원 파견」 『濟州新聞』(1964. 10. 11).

130) 「해녀분쟁의 진상, 상공부 장관에게 보낸 진정에서」 『濟州新報』(1954. 6. 9).



제주도와 수산당국은 이때부터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상북도 관계자들을 만나 해녀문제 해결<sup>131)</sup>을 위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1954년 6월 14일 경북지사와 제주도지사간에 자유입어를 허용하는 각서를 교환하고, 1,300명의 제주도 해녀가 경상북도 9개 조합에 입어할 수 있음을 합의하였다. 각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선해녀를 우선 입어하게 하고, 잔여 필요해녀를 출가해녀 중에서 입어하게 할 것, 해녀가 어획한 해조류를 자유로이 건조시키게 할 것, 행사료 30% 전액과 위반수수료 4%를 감하는 반면 진흥회비만 17%를 징수할 것, 판매시기를 8월과 10월로 정하여 최고가격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sup>132)</sup>

그러나 각서를 체결하고도 일선 조합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태도로 적극 반대하였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지선해녀를 우선 입어하도록 하고, 잔여 필요한 해녀를 출가해녀 중에서 입어하게 한다”는 항목으로, 지선어업조합측은 출가해녀는 필요치 않으니 입어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133)</sup> 그러나 이면은 출가해녀를 입어시키지 않으면 그 지방해녀만으로 충분히 과거와 같이 입어시킬 수 있으며, 제주도로서도 지방해녀이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도 말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 산업과장은 1954년 7월 10일 경상북도지사를 방문하고 과거 30여 년 간의 경상북도 각 어업조합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화두로 삼아, 문제가 된 각서의 항목에 대한 견해를 호소하였다. 결국 경상북도지사와 산업과장, 수산과

131) 당시 제주도는 다음의 6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① 경북일대에서 해녀를 징용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 30년 전부터라는 것 ② 그동안(일제 때) 수 삼차 간에 걸쳐 이의 타개책이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간에 진행되었으나 해결치 못하였다는 것 ③ 일제 때 심지어는 양도 산업부장까지 교대시켜도 해결치 못하였다는 것 ④ 이 문제의 이해관계는 육천만원에 달한다는 것 ⑤ 경북 대부분의 어조는 순전히 해녀수입으로서 유지하여 나간다는 것, 환언하면 어조의 존엄문제라는 것 ⑥ 경북의 수산물 거상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해녀 교섭기」(1) 『濟州新報』(1954. 8. 1).

132) 「경북해녀 교섭기」(2) 『濟州新報』(1954. 8. 3).

133) 제주도의 해녀 2천 여 명의 경북출가 입어가 금년부터는 불필요, 극소수로 할 것이라고 한다. 경북도내의 연 생산량 1백만 관에 달하는 외화획득의 총아인 천초채취를 위하여 매년 제주도로부터 경북도에 출가하여 오는 해녀의 수는 약 2천명에 달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내연안의 지원해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탓으로 제주해녀들의 입어는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한다. 「천초채취 앞두고 지원해녀 격증」 『朝鮮日報』(1955. 3. 8).

장과 함께 장시간 논의한 끝에 출가해녀 중 관행이 있는 자의 입어를 보장시키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수산 당무자들은 끝내 일선 어업조합에 경상북도지사의 지시를 전달하여 주지 않고 일선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결국 7월 15일 상공부에 진상을 보고하고 다시 강력한 지시 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7월 17일 경상북도지사는 “각서 이외의 금액을 회수치 못하고 관행이 있는 출가해녀는 지방해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어시키며, 허가처분이 아직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입어시키도록 경찰국에 연결하여 준다”는 세 가지 공약을 하고, 날씨만 좋으면 일선 어업조합에서 뭐라 하든지 무조건 입어할 것을 약속하였다.<sup>1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측은 1955년부터 출가해녀를 500명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sup>135)</sup>를 보였다.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권익을 수탈당하게 되자 제주도는 해무청에 조정을 요청하게 됐고, 경북과 협정이 이루어 졌다. 그 내용은 경북 지방 출가해녀는 500명을 상한선으로 제주도지사가 출가증을 교부하고 경북도지사는 출가증을 가진 자에 한해 입어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북관내의 어업조합에서는 출가증 소지해녀의 입어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거나 접수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입어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1955년 경북관내 제주도 출가해녀 일동(대표 김종대)은 상공부장관에 어장내의 입어관행 분쟁에 대해 1월 31일자로 상공부장관에 사실보고와 함께 재정신청을 하였다.<sup>136)</sup>

그리고 1년 후 1956년 1월 31일, 수산업법 제69조에 의한 상공부 장관의 재정은 경상북도 양포(良浦)·양남(陽南)·구룡포(九龍浦)·감포(甘浦)·대보(大浦) 각 어업조합은 제주도 해무당국이 인정한 제주도 출가해녀에 대한 각기 향유하는 공동어장내의 입어관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어업조합 향유 공동어장 내에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천초·은행초·앵초·패류를 채취할 수 있고, 허가 인원은 양남어업조합내 70명, 감포어업조합내 121명, 양포어업조합

134) 「경북해녀 교섭기」(3) 『濟州新報』(1954. 8. 4).

135) 경상북도 해안일대에 산재해있는 천초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 채취를 둘러싸고 경북출신 해녀들이 제주도로부터 출어하여 오는 해녀들의 수산물 채취를 반대하는 데에 해마다 전가 양자 간에는 적절한 대립분쟁이 야기된 바 있었는데 최근의 투쟁에서는 경북도 수산국장과의 같은 분쟁의 해결점을 협의한 결과 제주출신 해녀는 5백 명에 한하여 출어를 허락하고 그 대신 그들에 대한 제반대우는 경북출신 해녀와 같이 취급하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일단락을 지었다고 한다. 「제주해녀의 경북 출어 5백 명만 받도록」 『朝鮮日報』(1955. 3. 16).

136) 「잠수들의 현주소」3 『濟州新聞』(1975. 6. 13).

내 279명, 구룡포어업조합내 434명, 대보어업조합내 166명으로 총 1,070명<sup>137)</sup>이다. 이로써 1956년부터는 경북에서도 표면상으로는 입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소정의 입어료만 납부하면 자유입어 할 수 있도록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권익 침해가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법으로 어장을 매매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해녀들의 권익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탈은 여전했다.

다음으로 입어관행을 인정하다는 상공부장관의 재정이후 출가해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겠다.

수산업법 제69조에 의한 1956년 상공부장관의 재정인원은 1,070명이었다. 그러나 <표 2>의 1960년대 제주도 출가해녀 분포를 보면 1966년까지 경북지역에 출가한 해녀들은 1,070명을 훨씬 넘었다. 이는 해녀들의 불법적인 밀 출가가 많았으며, 이 수를 합치면 실제 출가해녀 수는 통계상 2~3배에 이를 것이다.

<표 2> 1960년대 제주도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인원 : 명)

년도 출가지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경북	1,584	1,320	1,354	1,049	1,103	605	654	216
경남	1,356	696	378	258	338	788	159	457
강원	787	125	165	113	188	129	81	145
전남	131	71	108	56	143	248	84	282
기타	232	3	66	62	131	109	115	67
계	4,090	2,215	2,071	1,538	1,903	1,909	1,093	1,167

※ 자료 : 제주도 편, 『濟州道誌』(下), 1982, 재인용.

해녀들의 불법적인 출가는 당시 제주도가 계획한 공식출가의 범위를 벗어나므

137) 재정인원을 1,070명으로 한 것은 일제말기 배급되었던 쌀과 생필품의 배급카드에 기준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잠수들의 현주소」3 『濟州新聞』(1975. 6. 13).

로 밀 출가에 대한 파악조차 쉽지 않았다. 제주도는 출가해녀 권익보호 차원에서 전국 25개 지역에 현지실태조사를 나가게 되었고, 당시 경북연안에 출가한 2~3천명의 해녀들이 착취를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138)</sup>

제주도와 수산당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출가해녀들의 분쟁에 관심을 가지고 출가해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55년 10월 20일 제주도당국은 ‘경상북도 출가해녀 보호대책의 건’으로 회의를 열어 해녀들의 계획출가를 결정하고, 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경북출가해녀 보호대책 간담회 결의록』에 기록된 회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알 수 있다.

계획출가는 경상북도의 행사료를 시정하고, 개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압주를 없애며, 부락진흥회에 어장을 이관치 말도록 하는 방도를 세우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 수산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50만원의 자금을 보조해주기로 결의하였다.<sup>139)</sup>

결국 제주도 당국이 내세운 출가해녀 대책은 제주도지사가 발급하는 출가증을 받고 지도원이 인솔하는 공식출가의 형식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따르지 않는 해녀들이 많아 해녀문제의 폐단은 계속되었다.

해녀를 모집할 목적으로 지선 상조회에서는 인솔자를 밀파하여 그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한몫 보려는 속셈으로 ‘밀 출가해녀’를 모집하였다. 그로인해 정식 출가한 해녀들이 입어를 거부당하는 불리한 현상도 빚어내었다.

밀 출가해녀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1956년 제주도어업조합연합회(이하 ‘제주어련’)가 출가해녀 청산권을 장악하였음에도 회수가 늦었으며, 출가증을 가짐으로 여러 가지 부조금이 많다는 것 또한 해녀들이 출가신청을 기피하는 원인이었다.

제주도와 수산당국에서는 밀 출가해녀를 막기 위하여 본도 출신의 인솔자 20명을 채용해 출가해녀의 권익을 위해 지선어조와 진흥회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고<sup>140)</sup>, 해녀들이 계획출가에 순응하도록 계몽선전문을 발표<sup>141)</sup>하는 등 여러 가지

138) 좌혜경, 「제주 출가해녀의 현지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민속원, 2006), 229쪽.

139) 제주도, 『慶北出稼海女 保護對策 懇談會 決議錄』, 1955.

140) 「해녀지도원으로 해무청 어련에 지시, 인솔자 20명 채용」 『濟州新報』(1956. 3. 14).

141) 「계획출가에 순응하라」 『濟州新報』(1956. 3. 24).



방안을 당부했다. 또한 밀 출가해녀에 대해 『제주신문』 1959년 3월 15일자의 광고란에 해녀대표 김종대씨의 호소문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출가해녀들에게 밀 출가하지 말고, 제주도 당국의 출가증을 받아 출가하도록 호소하였다.<sup>142)</sup>

문제가 심각해지자 1961년 3월 10일 제주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 및 제주·한림·서귀포·성산포·추자어업조합 이사의 공동명의로 <경북 출가잠수 및 어민 각위께 알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근 몇 년 동안 무질서한 밀 출가에서 오는 잠수들의 손해를 날날이 파헤치고 있다. 제수수료 및 각종세금에서 50%<sup>143)</sup>와 제품에서 뚜렷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 검근계량을 지선 지방민들의 자의로 집행하는데서 약 30%로 지방부락민들의 소득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등 총 수입의 80%라는 엄청난 숫자가 잠수들의 이익에서 수탈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합법적으로 입어관행 어장에 입어권을 지니면서도 극심할 경우 소득의 80%를 착취당했다는 것이다.<sup>144)</sup>

그럼에도 해녀들이 출가를 많이 했던 이유는 제주도내에서보다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해녀 1인당 최고 수입이 4만원인 반면 출가해녀는 최고수입이 8만원으로 2배가 넘었다.<sup>145)</sup>

### 3. 1960년대 후반 입어관행 분쟁 패소판결 후 변화

제주도 해녀들의 출가함에 있어 각지에서의 분쟁이 계속되자 1966년 제주도와 수산당국에서 출가해녀 억제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과 맞물려 1967에는 경북제

142) 경상북도에 출어하고자 하는 해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무청에서 발행하는 출가증을 받도록 하여 자유입어라 결정되는 날을 기다리라.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참고 또 참아서 금년에는 한사람도 경북에 오지 않음으로서 오는 해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한라산 맑은 물을 마시고 자란 우리들이 이만한 단결을 못한다면 어찌 제주도에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인가. 머지않아 기쁜 소식을 전하겠으니 모든 해녀들은 흔들림 없이 기다리시라! 그리고 뜻있는 제주도민과 지도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널리 해녀들에게 선전 지도하여 단결케 하는 한편 기지주(어장매매인)의 심복자들이 해녀를 모집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여 주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해녀 및 관계자에게 호소하는 말씀」 『濟州新報』(1959. 3. 15).

143) 각종세금은 입어행사료 23.5%, 위판수수료 6%, 어업세 2%, 동부가설 2%, 원천과세(교육세) 0.9%, 포장·인부·운반 및 검사료 5%, 인술자 수수료 10%로 총 50%이다.

144) 김영돈, 『한국의 해녀』(민속원, 2002), 31~32쪽.

145) 강대원, 『改訂版 海女研究』(한진문화사, 1973), 79쪽의 ‘어협별 해녀수익’ 표에 기록되어 있다.



정지구에서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소송>의 패소판결로 출가해녀들의 인원수와 진출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해녀들의 출가가 늘어가고 점차 기술을 배운 육지부 지선(地先) 여자들도 해조류 채취를 본격화하여 해녀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1967년 3월에는 경북재정지구 3개 어업협동조합이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소송은 구룡포, 감포, 양포의 어협장이 원고가 되어 몇 해 동안 입어 실적이 없는 제주도 출신 해녀 6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소장(訴狀)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법 제40조(동 시행령 58조 제32항) 규정의 공동어장 입어 관행자라 함은 그 하나는 공동어업권의 소유자인 어업 협동조합 지역 안에 거주하는 관행 있는 어업자이고 그 둘은 타 조합지역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구역 내에 입어하는 입어 관행자를 말하는바 피고들은 그 둘에 속하고 그 입어 관행권은 입어가 계속될 때 한하는 것이지 입어의 중단이나 또는 관행자가 사망했을 시는 동 입어관행은 소멸되는 것이고 동 권리는 양도 매매 또는 상속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입어 관행에 대한 재정을 받은 수 년 이후 59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어장에 입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동어장에 입어 관행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해줄 것.<sup>146)</sup>

이 주장은 경북재정지구의 제주도 출신 해녀는 매년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자만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입어경력이 없는 자는 입어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1968년 5월 29일 원고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다음 내용의 답변서<sup>147)</sup>를 제출했다.

146) 「잠수들의 현주소」3 『濟州新聞』(1975. 6. 13).

147) 최근에 입어한 사실이 없다 해도 제주도 출신의 공동어장 입어권은 특정 개인자격이 아니고 제주도출신 잠수라는 자격에서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제주도 잠수의 출가절차를 보더라도 제주도가 각 조합을 통해 출가 희망자에게 출가신청을 하게하고 그 수가 재정인원을 미달했을 때는 신청자 전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특정잠수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인원수에만 기준을 두어 제한인원에 맞도록 줄이고 출가 시켜온 바 특정 개인에 기준(規準)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도 출신 잠수는 '제주도 출신 잠수'라는 자격만 갖고 입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매년 입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입어 등록부 등 본에도 '제주도 출가 잠수 1,070명에 한하여 입어를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지 특정인의 명단을 지적한 바 없고 법제 당국의 입어 관행에 대한 질의 내용에 의해서도 명백한 것이다. 「잠수들의 현주소」4 『濟州新聞』(1975. 6. 14).

결국 분쟁은 재정지구 출가해녀의 입어관행권이 특정 개인 자격에서 인정되는가, 아니면 제주도 출가해녀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인정되는 권리인가 하는 것이었다. 선고 공판에서 대구지법은 “최근에 입어한 실적이 없는 일부 피고들은 감포, 양포, 구룡포 공동어장 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래 관행에 관한 입어권은 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인정되는 것이고 입어의 관행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입어권자가 사망하면 그로서 그 권리는 소멸하고 상속이나 양도되는 것이 아닌 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친 입어의 중단으로 입어 관행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들이 가진 입어권은 그들을 포함한 제주도 잠수 1,070명 전체에 의한 사람이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므로 그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입어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피고들이 결혼이나 타처(他處) 이주 또는 입어의 관행이 계속되는 여부에 불구하고 소멸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반드시 단체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또 피고들을 포함한 제주도 잠수 1,070명에 대한 앞서 나온 상공부 장관의 재정 또한 그것이 1,070명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입어권을 창설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68년 8월 20일 패소판결을 받은 후 제주도는 다시 9월 30일 두 번에 걸쳐 항소했으나 얼마 후 취하하고 말아 패소가 확정돼 버렸다. 소송 이후에는 제주도 해녀들은 경남이나 전남 지방으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출가하는 이유는 도내에서보다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다. 1968년도의 해녀수입은 제주도내 해녀는 평균 12,500원이나 출가해녀는 23,000원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sup>148)</sup>

이 소송의 패소판결은 출가해녀들의 진출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이듬해인 1969년 출가해녀 수는 경북 216명, 경남 457명, 전남 282명, 강원 145명으로 경북재정지구가 아닌 남해 지역으로의 출가가 많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인정되어 왔던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은 1967년 소송

148) 「잠수들의 현주소」4 『濟州新聞』(1975. 6. 14).

의 패소판결로 소멸됨으로서 타지로의 이동에 법적을 제한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sup>149)</sup>

한편 제주도 당국은 출가해녀들에 대한 수탈이 계속됨에 따라 1966년부터 해녀들의 출가를 억제시킨다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었다.<sup>150)</sup> 이는 출가해녀들이 입어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출가해녀와 지선민의 이익은 상반되어 마찰이 생기고 제주해녀들만큼의 기량을 보이는 지선해녀도 늘었으므로 출가해녀의 거부현상은 법이 아무리 개입해도 시정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등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절약한다면 도내에 취업해도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으로 수산당국은 이들 출가해녀의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수산당국은 출가해녀 대책으로 ① 해녀 안보내기 운동 ② 잠수기선의 공동어장 침범방지 ③ 투석사업 등에 의한 어장개량 ④ 비식용 해조류 채취 ⑤ 관광자원으로서의 인간문화재 보호 등을 계획하였다.<sup>151)</sup>

그리고 1968년 수산청에서는 경상북도에 출가하는 나잠어업자들의 복리증진과 생산증강을 위해 출가절차를 정리한 <나잠어업자의 출가지침><sup>152)</sup>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 이후는 그리고 육지부에서 지선 해녀들의 등장과, 미역 가격의 하락으로 출가해녀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표 3>과 같이 당국에 신고하여 출가를 하는 해녀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49) 안미정, 『제주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42쪽.

150) 「잠수들의 현주소」3 『濟州新聞』(1975. 6. 13).

151) 「해녀현황과 문제점」 『濟州新聞』(1970. 5. 2).

152) 1968년 수산청에서 발표한 <나잠어업자의 출가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가 나잠어업자라 함은 제주도 출가 잠수로서 경상북도 내 공동어업권에 입어 보존 등록된 1,070명을 위시하여 각도 내 공동어업권에 입어 보존 등록된 자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도원이 수협 제주도 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출가 잠수를 인솔 단위로 편성하고, 그 명단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출가증을 받은 연후에 인솔한다. 이들의 입어지도와 권익 옹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관내 어업협동조합에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부락을 수시 지도 하고, 제주도지사는 4명 이상의 어협 직원을 관계 지구에 파견하여 출가자의 지도에 임한다. 출가나잠어업자가 채취한 어획물은 수산자원 보호령 제21조 및 동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장소 이외에는 매매 교환할 수 없으며, 어획물은 가급적 관수동 지시저울을 사용하고, 제주 지부에서 발급한 카드에 그 수량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하게 한다. 경상북도 관계 어협에서는 출가 잠수의 어획된 판매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 어협 직원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협조 하여야 한다.

<표 3> 1970년대 제주도 조사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인원 : 명)

출가지 \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5	1976
경북	85	126	249	199	16	92
경남	293	302	264	254	264	256
강원	-	166	104	64	1	35
전라	188	284	158	238	177	108
기타	511	352	142	112	51	103
계	1,023	1,230	917	867	509	543

※ 자료 : 1970~1973년 통계수치는 제주도 편, 『濟州道誌』(下), 1982, 재인용.  
 1975~1976년 통계수치는 「출가해녀 3년 새 반감」 『제주신문』(1976. 1. 10),  
 재작성.

<표 4> 1970년대 수협중앙회 조사 출가해녀수와 진출지역

(인원 : 명)

출가지 \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경북	609	517	524	345	381
경남	2,378	1,896	1,621	1,715	1,865
강원	365	274	120	115	842
전남	296	283	372	389	457
기타	139	125	126	135	98
계	3,787	3,095	2,763	2,699	3,643

※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조사부, 『잠수실태조사』, 1975, 33쪽 재인용.

그러나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제주도 당국에 신고하여 출가해녀는 1,000명 아래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수협중앙회 조사<sup>153)</sup>에 의한 해녀는 3,000여명에 이르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전히 밀 출가하는 해녀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 당국의 공식출가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계획출가의 모집인원은 모자라고, 출가증 발급의 번거로움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밀 출가해녀들은 상당한 수였다. 이들은 점차 해녀인술자도 없어져 감으로 그 지역주민이나 아는 사람의 권유, 동조에 의해 연고자를 찾아 출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54)</sup>

그러나 문제는 밀 출가 해녀들이 고용계약도 구두로 하거나 전혀 없는 상태이며, 비조직적으로 전도금 사용을 하여 자유마저 구속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식주의 불편과 건강관리의 미흡, 공동어장이 아닌 지역에서 조업하므로 부정어업, 주민등록법상의 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sup>155)</sup>

이상으로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의 실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는 1920년대 입어 분쟁으로 인해 일정한 입어료를 납부하면 관행에 의한 입어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1930년대 출가해녀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동경로도 한반도 각 연안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일대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다.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에서 입어관행 분쟁이 심각했는데 1956년 상공부장관의 재정으로 1,070명의 합법적인 입어인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재정인원 외 불법적으로 출가하는 해녀가 늘어 해녀들의 진출경로도 경북재정지구에 집중되었다. 이때는 불법 출가에 대한 수탈이 심했으나 도내에서 보다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밀 출가해녀가 증가하였다. 1960년대 후반 입어관행 패소 판결 이후는 입어관행이 인정되어 오던 지역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 출가해녀의 입어 경로에 영향을 주어 경북으로의 출가가 줄어들고 전남, 경남 등지의 출가가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밀 출가 인원이 많아 제주도당국의 계획출가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제주도의 조사와 수협중앙회 조사 통계의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5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수산업법에 의해 각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두고 그 아래 어촌계를 두는 조직체이다. 수협중앙회는 일선어촌계의 보고로 조사한 해녀수를 통계로 한다.

154) 「잠수들의 현주소」4 『濟州新聞』(1975. 6. 14).

155) 「해녀출가는 연고지 따라」 『濟州新聞』(1976. 8. 10).



1970년대 제주의 해녀들은 새마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학교건립, 전기가 설, 도로포장 등의 마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후 제주도 산업의 발전과 생활양식이 변화를 보이면서 해녀가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 제주도에서는 감귤농업과 관광산업이 개발되어 제주도의 젊은 여성 인력이 새롭게 개발되는 산업 부분으로 흡수되면서 물질을 배우려는 젊은 여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스레 해녀수가 감소되어 갔다.



## V. 맺음말

근현대 제주도의 출가해녀들은 여성노동자라는 점과 고용관계에서의 약자의 입장으로 항상 소외받는 계층이었다. 그러나 근대기 제주사회에서의 해녀의 위치는 대단했다. 출가해녀들은 20세기 초반 제주도 산업경제의 주로 담당자였으며 여성노동력의 대표주자로 그 위상을 다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과 일본등지의 동북아시아로 출가물질을 다니면서 그들만의 작업 기술과 문화를 전파시켰다. 그곳에서도 제주도 해녀들은 제 몫을 다하여 일을 했고, 돈벌이를 나갔던 출가(出稼)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녀들이 타 지역으로 출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큰 효과는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였다. 출가해녀들이 땀과 노동으로 타 지역의 바다어장을 개척하여 돈을 벌었고, 그 수입은 제주도로 보내어져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루어 제주도의 경제가 윤택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해녀들이 타 지역으로 출가한 기원과 진출배경을 파악하고, 이들의 출가상황과 실태를 살피고,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의 실상을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 보면, II장에서는 출가해녀의 기원과 진출배경을 살펴보았다. ‘출가(出稼)’는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것으로, 제주도 출가해녀의 기원은 1890년대 경남 부산 목도(牧島)에 처음으로 출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녀들의 출가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개항 이후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상품가치가 높아져 해녀들의 노동력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쌍안잠수경의 보급으로 해녀들의 작업도구에도 변화가 생겨 작업능률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 어업인들이 한반도의 연안어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기술을 갖춘 잠수기업자들이 상품가치가 있는 제주도 연해의 전복과 해삼 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해갔다. 이들의 남획으로 제주도 연안어장의 자원이 고갈되고 생산량이 줄어들자 제주도의 해녀들은 타 지역으로 돈벌이를 나가게 되었고, 한반도의 각 연안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일대까지 진출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Ⅲ장에서는 출가해녀의 상황과 실태를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들은 보통 2~8월을 한 어기로 삼고, 10~15명의 해녀가 인솔자를 따라 출가지역으로 나가 공동생활을 하며, 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은 저축을 해 제주도의 가정으로 보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와 일본 등지로 진출하면서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계약에 의해 고용관계에 있는 일본 중매인과 인솔자(객주)에 의한 착취와 수탈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결성된 해녀어업조합이 어용화 되면서 출가해녀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해방이후에는 관행대로 한반도의 동해·서해·남해안 각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어려운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는데, 출가해녀들의 입어관행 분쟁 등 지방어업인과의 마찰이 일어났다. 이외에 지방어업조합의 입어로 인상, 현지에서의 불법적인 어장매매, 무능한 어업조합 운영, 악질전주의 학대 등 해녀들의 수탈과 착취 실태는 출가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Ⅳ장에서는 입어관행 분쟁으로 본 출가해녀의 실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근대기 제주도 해녀들은 한반도의 미개척 어장으로 진출해 해조류를 채취해 왔다. 그러나 1900년대 초부터 한반도의 어장을 마음대로 이용하던 일본 무역상 아래의 제주해녀들은 출가지역의 어업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1920년대 발생한 경남 지역주민들과의 입어 분쟁으로 인해 일정한 입어료를 납부하면 관행에 의한 입어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1930년대 출가해녀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동경로도 한반도 각 연안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일대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다. 이는 출가해녀들이 제주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어 제주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경북재정지구에서는 입어관행 분쟁이 심각했는데, 1956년 상공부장관의 재정으로 1,070명의 합법적으로 입어인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정인원 외 불법적으로 출가하는 해녀가 늘어났고 해녀들의 진출경로도 경북재정지구에 집중되었다. 이때는 불법 출가에 대한 수탈이 심했으나 도내에서 보다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밀 출가해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입어관행 패소판결소송> 이후로 입어관행이 인정되어 오던 지역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는 경북으로의 출가가 현저히 줄어들고 전남,

경남 등지의 출가가 늘어나 해녀들의 진출경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밀 출가 인원이 많아 제주도당국의 계획출가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제주도의 조사와 수협중앙회 조사 통계수치의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해녀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대 15,000명이었던 해녀가 지금은 5,000여명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들마저 노령화되어 60~70대가 주로 활동하는 이들이 20년 후 80세가 넘으면 해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해마다 수 천 명씩 제주여성들의 대이동이었다던 출가물질은 1980년대 들어서 거의 끊겼다. 요즘도 일부의 해녀들이 3~6개월 짧은 기간에 돈을 벌러 남해안이나 일본 등지로 출가했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비공식적이며 그 수효는 얼마 되지 않는다. 출가해녀들은 타지에 나가 생활하더라도 끈끈한 집단생활 속에 공동체 의식은 더욱 단결하여 갔다. 그들의 뛰어난 물질역량과 채취한 해산물의 높은 가치는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어장을 누비고 다녔으며,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은 강인함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출가해녀들의 강인함과 개척정신은 제주도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여 경제적 성장을 일구어낸 바탕인 것이다.

본 연구는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들의 한반도 내 입어관행 분쟁의 변화양상에 대해 중점을 맞춰 고찰하였으나, 문헌상의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출가해녀의 입어관행 분쟁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또한 한반도 외에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외국으로의 출가해녀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 앞으로 출가해녀들의 근현대 생활사를 깨우치는 인식을 가지고 한반도 외 지역으로 출가한 해녀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이들의 생애사적 관점의 분석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부록>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 연표

시 기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 연표
1876년 8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와 일본인 무역규칙 체결 - 개항이후 일본 어민이 자유로이 한반도 어업침탈 가능하게 됨
1833년 6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체결 - 통상장정 제41관에 따라 일본은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 연안에 대한 통어권(通漁權)과 함께 포획한 어개(魚介)를 매매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의 어업침탈 본격화 됨
1895년 〇월	한반도 내 출가(出稼)의 시작 - 제주도내 연안 어장의 황폐화로 제주 해녀들은 경남 부산 목도(牧島)로 출가어업이 시작됨
1903년 3월	일본 출가(出稼)의 시작 - 김녕의 뱃사공 김병선(金炳先)이 해녀 수명을 인솔하여 미야케지마(三宅島) 미에현(三重縣) 으로 첫 출가함
1911년 4월	입어 분쟁 발생 - 경남 울산 장생포에서 제주도 출가 해녀들과 그 지방 어민들 사이에 천초 채취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함
1912년 2월	조선어업령 제정 - 일본어민의 한반도 어장 진출 합법화됨
1920년 4월	제주도해녀어업조합(濟州島海女漁業組合)설립 - 출가해녀들에 대한 수탈로 제주도 유지들이 해녀어업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설립됨
1923년 12월	제주도와 오사카(大阪)간 직항로 개설 - 농촌의 노동력과 제주해녀들의 일본 출가 활발해짐
1925년 2월	입어협정 체결 -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수산당국 간 협상으로 ‘제주도 해녀 입어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 (당시 제주도는 전라남도 관할이었음)
1933년 〇월	중국 청도(靑島) 출가(出稼)의 시작 - 문덕진(文德進)의 인솔로 구좌읍 연평리 해녀 20여명이 쓰시마(對馬島)에서 미역포자를 청도로 이식해서 채취하러 감
1937년 5월	제주도어업조합 개칭 - 해녀를 중심으로 한 해녀어업조합과 각 읍면 단위로 조직된 어업조합이 상호타협으로 합병하여 개칭됨
1946년 〇월	수산업법 제정 - 제40조 1항은 해녀의 관행입어를 어업권자가 거절할 수 없고, 2항은 입어료만 내면 수산당국의 인가를 얻어 입어할 수 있음



시 기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 연표
1954년 4월	입어관행재정 청구 - 제주도에서 상공부 당국에 출가해녀의 경상북도 입어관행 재정을 청구함으로써 어장매매와 수탈에 의한 출가해녀의 착취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함
1954년 6월	출가해녀 자유입어 허용 - 경북지사와 제주도지사 간의 각서 교환에 따라 1,300명 출가해녀의 자유입어가 허용됨
1955년 1월	경북 측의 입어 제한 - 경북 측의 일방적인 입어 인원 제한(500명)으로 상공부 장관에게 재정 신청함
1955년 10월	제주도당국의 공식출가 계획 - 제주도지사가 발급하는 출가증을 받고 지도원이 인솔하는 공식출가 계획됨
1956년 1월	상공부장관의 재정으로 경북재정지구의 조건부 입어관행 인정 - 천초, 앵초, 은행초, 패류에 한하여 채취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1,070명의 입어관행을 인정받았으며, 소정의 입어료만 납부하면 자유입어가 가능해짐
1964년 4월	해녀보호지도원 파견 - 해녀들이 당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각 어협에서 해녀보호지도원을 파견 경북재정지구로 보냄
1966년 4월	출가해녀 억제방침 - 제주도 당국은 출가해녀들에 대한 수탈이 계속됨에 따라 해녀들의 출가억제방침을 세움
1968년 8월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소송> 패소판결 - 출가증을 소지한 1,070명의 해녀 외에 밀 출가해녀의 증가로 인해 경북 감포, 양포, 구룡포 어업조합장 명의로 '제주도 해녀 1,070명에 대한 입어관행권 소멸확인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가결됨으로써 입어관행이 소멸됨
1970년 4월	해방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해녀 26명 일본 진출 - 일본 고지현 다카오카어협 측에서 '한국채조잠수기술지도자'의 명목으로 제주도 해녀 초청, 천초생산과 채취 작업에 종사함

(※ 비고 : 시기불명은 ○월로 표기함)

## 참 고 문 헌

### 1. 문헌자료

『삼국사기(三國史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

신광수, 『석북집(石北集)』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규창집(葵窓集)』 下

이익태, 『지영록(知瀛錄)』

위백규, 『존재전서(存齋全書)』

경상남도,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濟州島海女入漁問題經過)』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조사부, 『잠수실태조사(潛嫂實態調査)』

수산청, 『나잠어업자의 출가지침』

제주도, 『경북출가해녀 보호대책 간담회 결의록(慶北出稼海女 保護對策 懇談會 決議錄)』

제주도어업조합, 『규약(規約)』

제주도어업조합, 『조합의 개요(組合の概要)』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연혁(沿革)』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강대원,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970.

강대원, 『改訂版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1973.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고창석 역자, 『耽羅國史料集』,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5.

김윤식 저·김익수 역, 『續陰晴史』, 제주문화원, 199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2002.

김영·양징자 저 / 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도서출판 각, 2004.

남제주군 편, 『南濟州郡誌』, 2006.

마쓰다이치지(栴田一二)저·홍성목 역, 『改訂版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5.

북제주군 편, 『北濟州郡誌』, 2006.

석주명, 『濟州島隨筆』, 보진재, 1968.

이즈미세이치(泉 靖一)저·홍성목 역, 『濟州島』,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9.

이익태 저·김익수 역,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좌혜경 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제주도교육연구원,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제주도 편, 『濟州道誌』 (下), 1982.

제주도 편, 『濟州道誌』 2권, 1993.

제주도 편, 『濟州의 海女』, 1996.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道誌』 제2권, 2006.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道誌』 제5권, 2006.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살암시난 살암주』, 2006.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濟州市水協史』, 1989.

조선총독부 농상공부편찬, 『韓國水産誌』 제3집 제주도, 1910.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2006.

한국명저대전집, 『石北全集』, 대양서적, 1978.

## 2) 논문

강만생,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김창후, 「세화리 해녀항일투쟁(1932년)의 역사적 배경」 『즈너풀이』, 1983.

- 다구치데이키(田口禎熹)저·홍성목 역, 「濟州島의 海女」 『濟州島의 옛 記錄』,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 다카노후니오(高野史男)저·정광중 역, 「쇠퇴하는 해녀어업에 대하여」 『濟州島史研究』 제11집, 제주도사연구회, 2002.
- 박찬식, 「제7장 일제강점기 도정과 민생」 『濟州道誌』 제2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_\_\_\_\_, 「歷史的 記憶과 記念」 『濟州海女：抗日運動, 文化遺產, 海洋文明』,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
- 에구치(江口保者)저, 「濟州島 出稼 海女」 『朝鮮彙報』, 1915.
- 안미정, 『제주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오선화, 『竹邊地域 移住潛女の 適應過程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원학회, 「제주 해녀어업의 전개」 『地理學研究』 제10집, 1985.
- 유철인, 「제주해녀의 삶 : 역사인류학적 과제」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 좌혜경, 「제주출가해녀의 현지적응」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_\_\_\_\_, 「제주해녀의 세계해양사적 의미」 『해녀항일운동의 역사와 기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
- 제민일보,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해녀가치의 보존 전승」, 제민일보사, 2006.
- 제주도청 편·홍성목 역, 「濟州島勢要覽」 『濟州島의 經濟』,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9.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제3집, 제주도사연구회, 1994.
- \_\_\_\_\_,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研究」 『인문학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한림화, 「해양문명사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후지나가 다케시(藤永 壯)저·홍성목 역, 「1932年 濟州島 海女の 鬪爭」 『濟州島의 옛 記錄』,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1.
- 홍순만, 「제6장 조선시대 말기」 『濟州道誌』 제2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 3. 구술자료

- 김성운, 1940년생, 경남 거제시 장목면 궁농리, 2005. 4. 27, 필자 채록.  
김용선, 1929년생,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2005. 4. 14, 필자 채록.  
김이산, 1937년생,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모항1구, 2005. 4. 13, 필자 채록.  
정성준, 1941년생, 경남 통영시 미수동, 2005. 4. 25, 필자 채록.  
우영애, 1940년생, 부산 영도, 2005. 4. 29, 필자 채록.  
현승여, 1942년생, 전남 통영시 미수동, 2005. 4. 26, 필자 채록.

### 4. 신문자료

- 「가련한 해녀의 운명」 『東亞日報』, 1920. 4. 22.  
「해녀조합의 소식」 『東亞日報』, 1920. 6. 1.  
「조합문제 해결」 『東亞日報』, 1921. 3. 19.  
「해녀문제 남선어업계 대 현안」 『東亞日報』, 1921. 4. 18.  
「비참애상의 주인공 제주해녀의 생활」 『東亞日報』, 1924. 4. 28.  
「제주도 삼천해녀와 사활문제 대해결」 『東亞日報』, 1932. 4. 23.  
「불황과 부작으로 도항해녀 천여 명 입어장소 따라 일본도항자격증」 『朝鮮日報』, 1933. 5. 5.  
「출가분쟁 재연」 『濟州新報』, 1954. 7. 11.  
「경북해녀 교섭기」(1) 『濟州新報』, 1954. 8. 1.  
「경북해녀 교섭기」(2) 『濟州新報』, 1954. 8. 3.  
「경북해녀 교섭기」(3) 『濟州新報』, 1954. 8. 4.  
「해녀문제 이상 없다」 『濟州新報』, 1954. 9. 5.  
「암울한 출가해녀 문제」 『濟州新報』, 1955. 2. 14.  
「해녀착취를 기도」 『濟州新報』, 1955. 4. 24.  
「해녀분쟁의 진상, 상공부 장관에게 보낸 진정에서」 『濟州新報』, 1954. 6. 9.  
「천초채취 앞두고 지원해녀 격증」 『朝鮮日報』, 1955. 3. 8.  
「제주해녀의 경북 출어 5백 명만 받도록」 『朝鮮日報』, 1955. 3. 16.  
「해녀지도원으로 해무청 어련에 지시, 인솔자 20명 채용」 『濟州新報』, 1956. 3. 14.



- 「계획출가에 순응하라」 『濟州新報』, 1956. 3. 24.
- 「살길 쫓아 이향으로, 해녀들 때 지어 속속 출가」 『濟州新報』, 1956. 4. 17.
- 「경북해녀문제의 현황」 『濟州新報』, 1957. 8. 28.
- 「해녀 괴롭히는 어조」 『濟州新報』, 1958. 8. 5.
- 「입어료 인하에 협조」 『濟州新報』, 1958. 8. 17.
- 「해녀 및 관계자에게 호소하는 말씀」 『濟州新報』, 1959. 3. 15.
- 「어장문제와 해녀의 권익문제」 『濟州新報』, 1959. 3. 27.
- 「서름은 해녀들에게만, 엉망인 경북 출가 업무」 『濟州新報』, 1959. 4. 17.
- 「해녀는 착취대상이 아니다」 『濟民日報』, 1961. 3. 16.
- 「출가해녀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라」 『濟州新聞』, 1963. 5. 21.
- 「경북지구 출가해녀의 실태」 『濟州新聞』, 1964. 10. 11.
- 「출가해녀들의 생산책임제」 『朝鮮日報』, 1966. 7. 21.
- 「출가잠수 또 수탈, 육지도에 연간 10명 보호 요청」 『濟南新聞』, 1969. 9. 18.
- 「해녀현황과 문제점」 『濟州新聞』, 1970. 5. 2.
- 「잠수들의 현주소」1 『濟州新聞』, 1975. 6. 11.
- 「잠수들의 현주소」2 『濟州新聞』, 1975. 6. 12.
- 「잠수들의 현주소」3 『濟州新聞』, 1975. 6. 13.
- 「잠수들의 현주소」4 『濟州新聞』, 1975. 6. 14.
- 「출가해녀 3년 새 반감」 『濟州新聞』, 1976. 1. 10.
- 「출가해녀의 생업현장」 『濟州新聞』, 1976. 7. 1.
- 「해녀출가는 연고지 따라」 『濟州新聞』, 1976. 8. 10.